

**강릉 도시관리계획**  
(강릉 구정 골프&리조트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전략(재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4. 4

(주)동해임산

# 목 차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15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1
제 4 장	토지이용 구상안 .....	27
제 5 장	대안의 설정 .....	39
제 6 장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등의 설정 .....	46
제 7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58
제 8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63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가. 계획의 배경

- 본 계획지구는 2010년 9월 “강릉 C.C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결정(변경)”(강원도 고시 제2010-318호/강릉시 고시 제2010-98호)을 고시하였으며, 2011년 6월 “강릉 C.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후 2011년 11월 2일 “강릉C.C 조성공사 실시계획 인가”(강릉시 고시 제2011-138호) 고시를 득하였음
- 강릉C.C 조성공사 착공 후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골프장)을 지구단위계획(복합형)으로 변경하여, 2014년 9월 19일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 등)결정(변경)(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고시를 득하였음
- 최근 골프대중화에 따른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골프이용객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골프코스 및 시설향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관련 시설의 공급은 매우 미흡하여 골프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나.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계획지구 내 생산성이 미약한 목장용지와 경작지, 비경제림을 골프장 조성(대중제 18홀)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자 함
- 관광기업도시 강릉이라는 입지여건과 레저수요의 증가 등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부응하며, 관광기반시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1.2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가. 추진경위

#### 1) 강릉 C.C 골프장 조성사업 (기 승인)

- 2007. 07 : (주)동해임산 설립
- 2010. 09 : 도시관리계획 결정(강원도 고시 제2010-318호)

- 2010. 10 : 강릉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강릉시 고시 제2010-109호)
- 2011. 06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2623호)
- 2011. 11 :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릉시 고시 제2011-138호)
- 2012. 02 : 공사 착공
- 2012. 03 : 공사 중지

## 2)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 승인)

- 2013. 02 :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 2013.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공람 및 주민 의견 수렴)
- 2014. 11 : 강릉복합단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입안서(강릉시→강원도 입안)
- 2014.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2657호)
- 2014. 09 :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 등) 결정(변경) 고시 (강릉시 고시 제2014-268호)

## 나. 향후계획

- 2024. 03.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및 협의회 심의
- 2024. 04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4.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 2024.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요청
- 2024.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4.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25. 02.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 2025. 05. :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 2025. 08.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6. 01. : 사업착공
- 2028. 02. : 사업준공

### 1.3 계획의 추진근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통해 계획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함

### 1.4 계획의 실시근거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 본 계획은 2014년 강릉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제1항 제2조에 의거하여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표 1-2〉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u>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u>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u>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u>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되어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표 1-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 가 전
계획면적	○ 1,029,330㎡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25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함)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별표 3]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함

**<표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p><b>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b></p> <p>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16. 5. 29.&gt;</p>

**2)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실시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야 하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도록 결정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

〈표 1-5〉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의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라.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실시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지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 해당함

〈표 1-6〉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구 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해당여부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해당 없음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	○ <b>환경영향평가</b>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자료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환경부 예규 제726호

〈표 1-7〉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

검 토 대 상			해당 여부
1. 일반기준			해당 없음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	500m	

비고 :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자료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표 계속>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

검 토 대 상	해당 여부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	해당 없음

자료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표 1-8>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구 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해당 여부
타. 체육시설의 설치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자료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마.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기후변화영향평가**

- 본 계획지구는 총 면적 100만㎡ 이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면적에 해당하나,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본 계획지구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일(2022.09.25.)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2014.06.)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2014.09.)된 계획으로, 금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절차를 이행 할 계획임

〈표 1-9〉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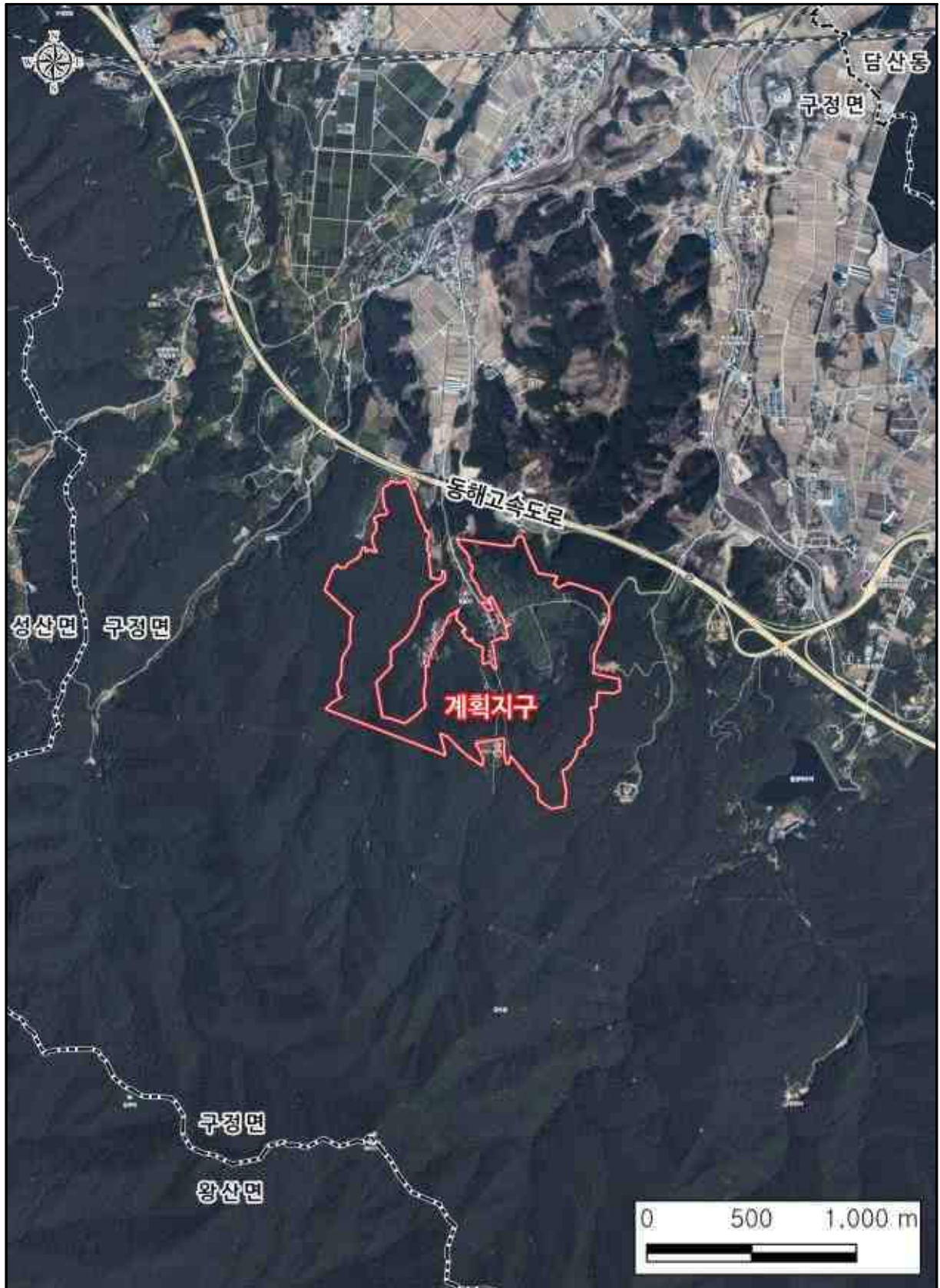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총 계획면적 : 1,029,330㎡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표 1-10〉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기준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	해당 여부
1. 영 별표 2제2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를 포함한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해당 없음
나. 2022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영 별표 2제2호의 개발기본계획(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으로 한정한다)이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계획규모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만, 영 별표 2제2호 마목 및 사목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개발기본계획(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으로 한정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계획규모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해당 없음

자료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환경부 고시 제2023-175호, 2023.7.25



(그림 1-1) 계획지구 위치도

## 1.5 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명 : 강릉 구정 골프&리조트

나. 위 치 :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 일원

다. 계획면적 : 기정) 1,002,909㎡ → 변경) 1,029,330㎡ 증)26,421㎡

라. 변경사항 : 복합형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마. 계획기간 : 2024 ~ 2028년

바. 계획제안자 : (주)동해임산

사. 승인기관 : 강릉시

아. 협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자. 계획내용 : 18홀 대중제 골프장 및 골프텔, 숙박시설, 부대시설 등

### 1) 도시관리계획 변경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029,330	-	1,029,330	100.00
관리지역	계	1,007,512	증) 21,818	1,029,330	100.00
	계획관리지역	1,003,214	증) 26,116	1,029,330	100.00
	보전관리지역	4,298	감) 4,298	-	0.00
농림지역		21,818	감) 21,818	-	0.00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2-4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645	100이하	구정 골프앤리조트 구성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2-5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53	100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1-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1,818	10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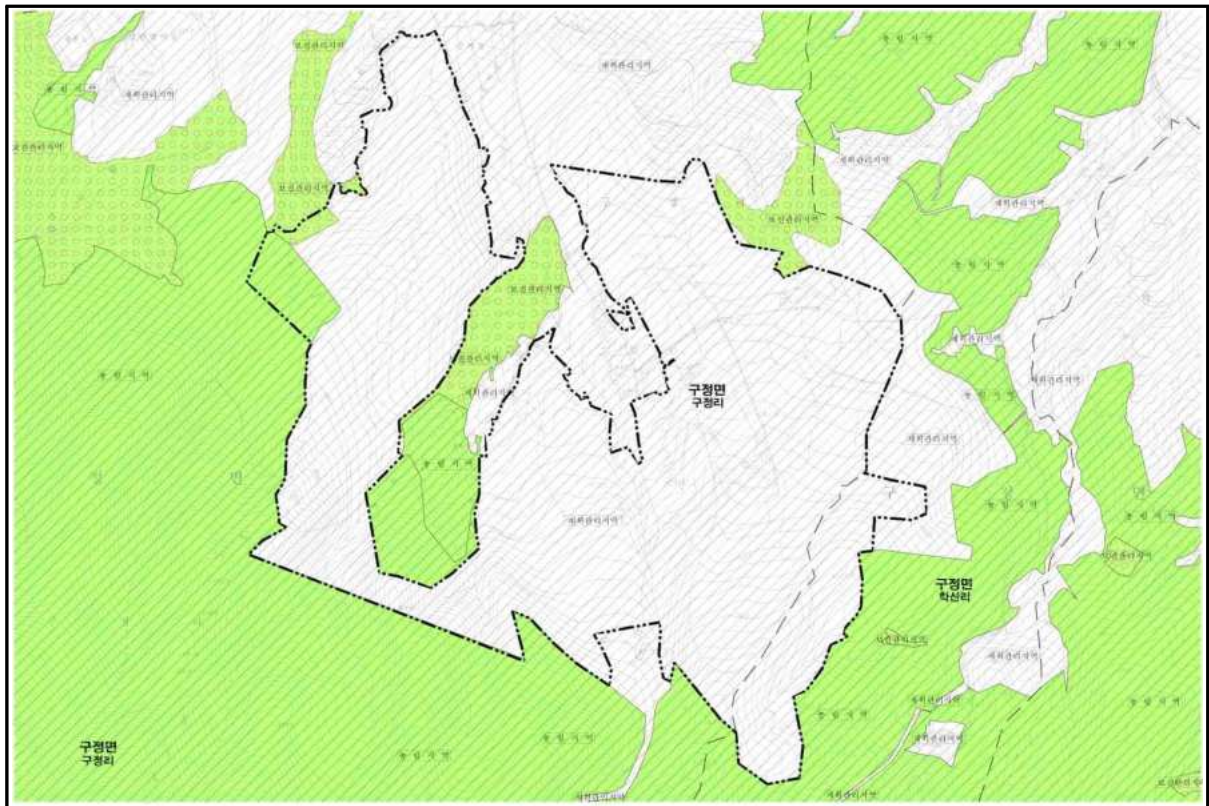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강릉복합단지	복합형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일원	1,002,909	감) 1,002,909	-
			주거형	구정면 구정리 37-84번지일원	438,125	감) 438,125	-
			관광·휴양형	구정면 구정리 산66번지일원	564,784	감) 564,784	-
변경	1	구정 골프&리조트	관광·휴양형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일원	-	증) 1,029,330	1,029,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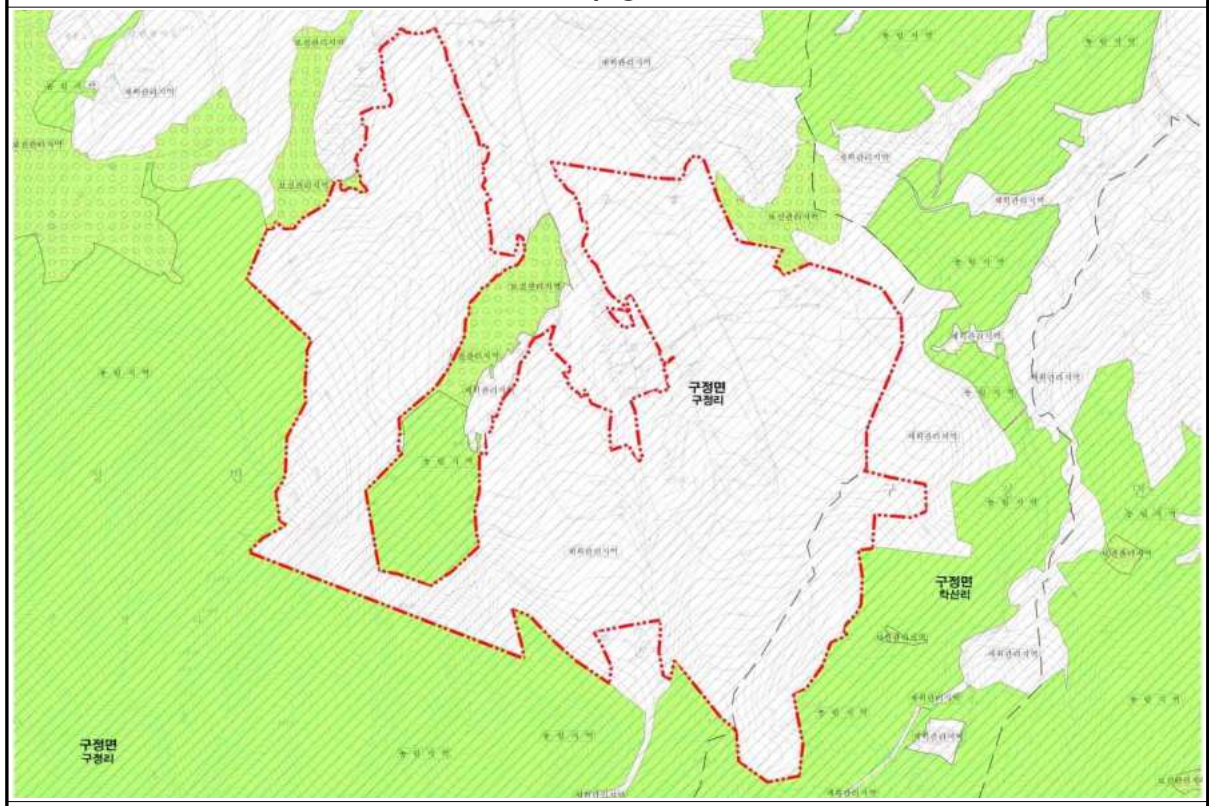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구정 골프&리조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형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li> <li>○ 구역계 변경 : 1,002,909㎡ → 1,029,330㎡ 증) 26,4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홀 대중제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하고자 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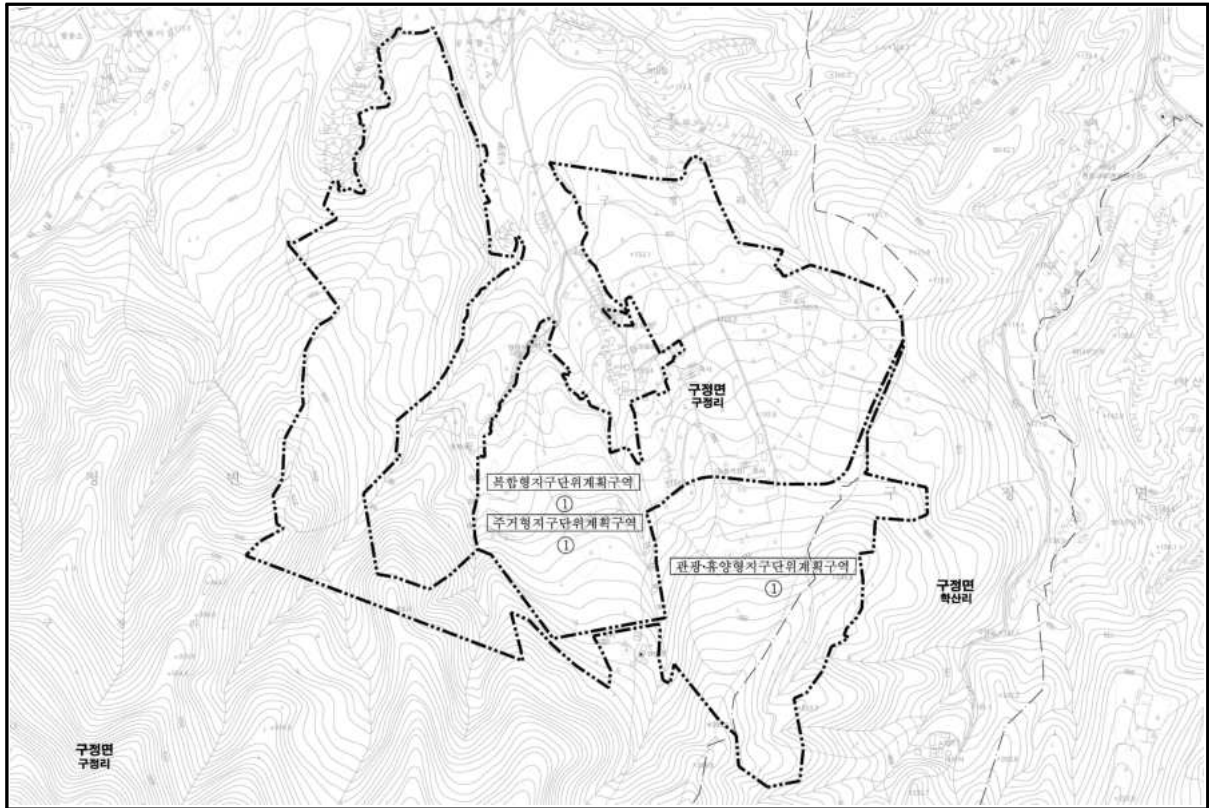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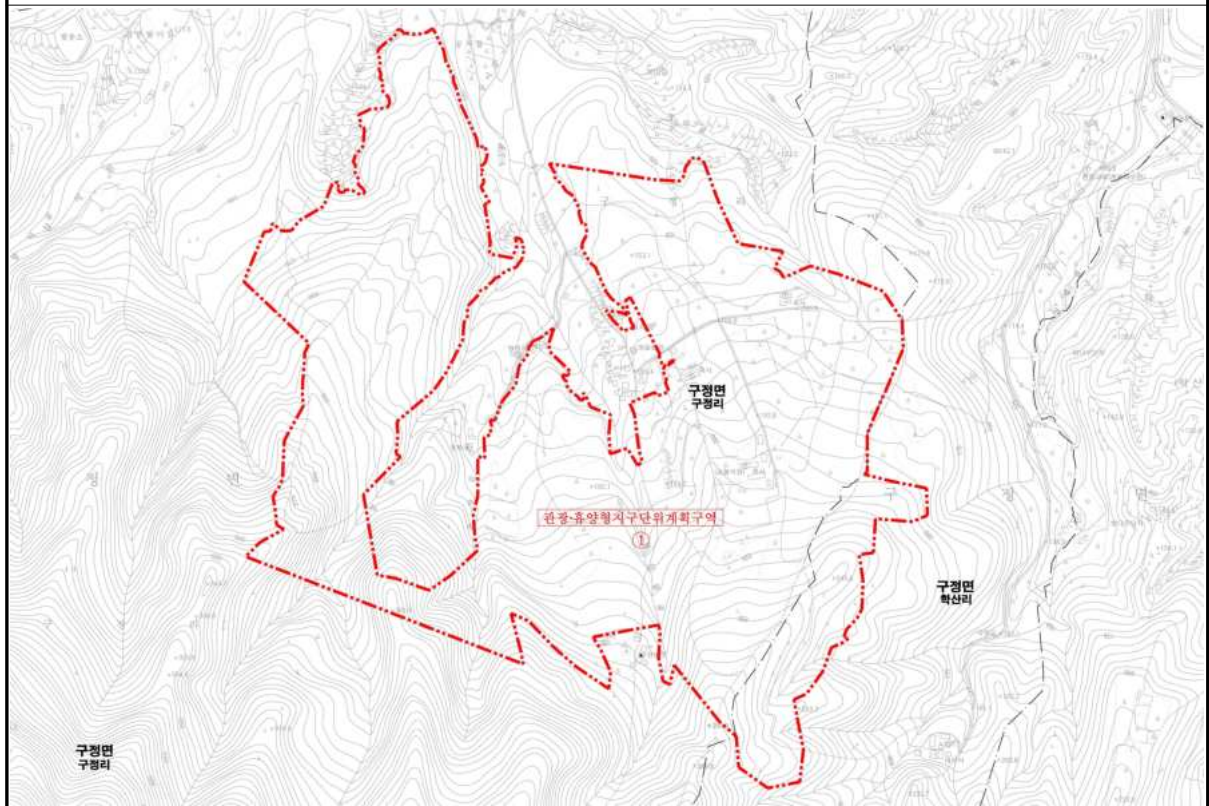
변 경

(그림 1-2)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그림 1-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2) 토지이용계획 주요 변경내용(총괄)

- 금회 18홀 대중제 골프장 조성 및 골프텔, 숙박시설, 부대시설 등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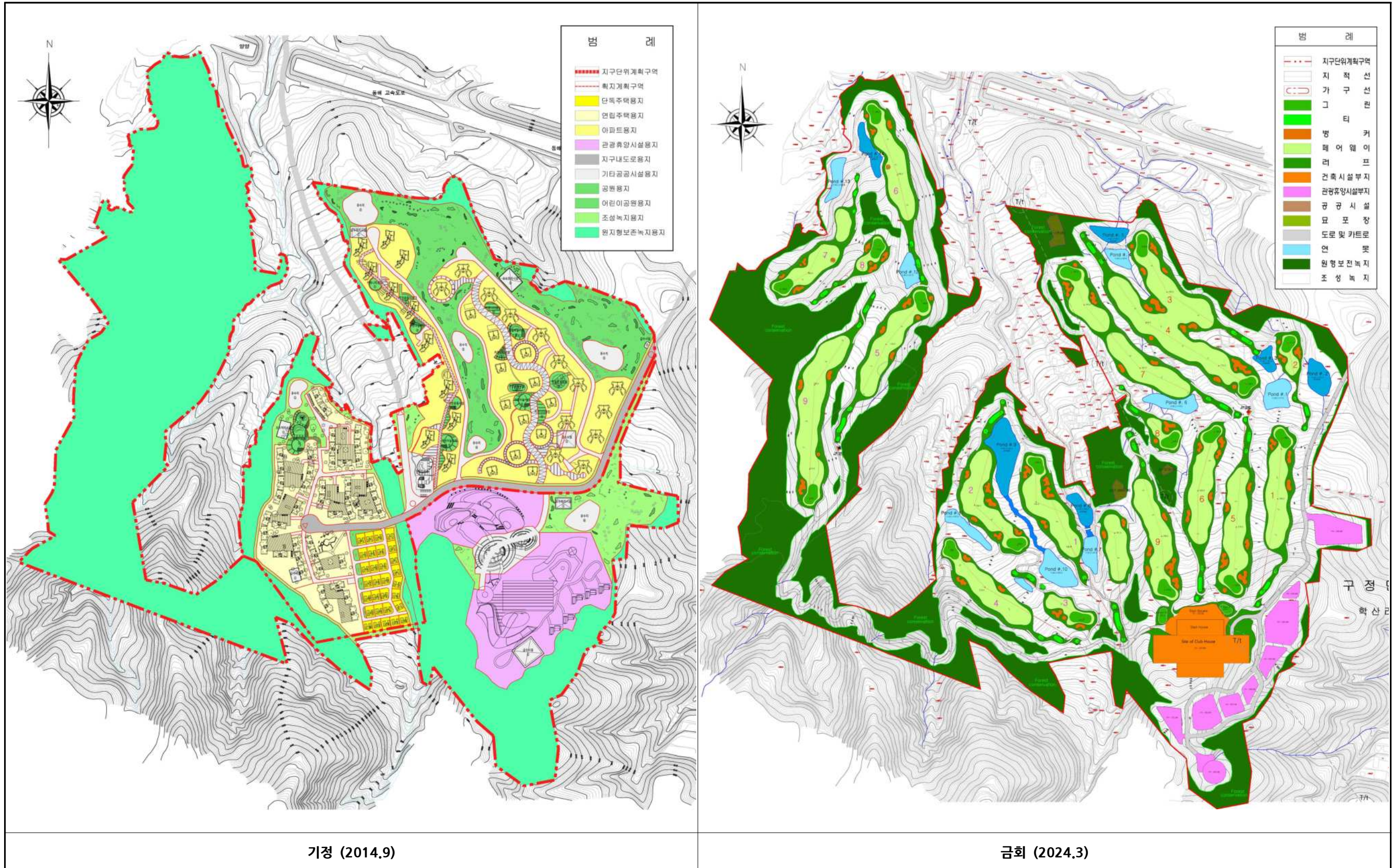
구 분	사업계획 변경내용
주 요 사 항	○복합형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 변경 -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1,002,909㎡ → 금회 1,029,330㎡ 증) 26,421㎡
관광·휴양시설	○관광·휴양시설 변경 - 면적 86,300㎡ → 26,432㎡ 감) 59,868㎡
공공시설	○관광휴양시설 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증가 - 면적 14,800㎡ → 84,724㎡ 증) 69,924㎡ ○주거형지구 내 공공시설 폐지
녹지	○관광휴양시설 지구 내 녹지 용지 변경 - 면적 463,684㎡ → 598,739㎡ 증) 135,055㎡ ○주거형지구 내 녹지용지 폐지
체육시설	○체육시설 용지 신설 - 면적 296,896㎡
건축시설	○건축시설 용지 신설 - 면적 : 22,539㎡
주거형 시설	○주거형 지구 폐지(주거형 지구 내 주거, 공공시설, 녹지 용지 폐지)

〈표 1-5〉 토지이용계획 변경(총괄)

구 분	기정① (2014.9)		금회② (2024.3)		증·감 (②-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002,909	100.0	1,029,330	100.0	증) 26,421
관광·휴양시설 지구	564,784	56.3	1,029,330	100.0	증) 464,546
관광·휴양시설 용지	86,300	8.6	26,432	2.6	감) 59,868
공공시설 용지	14,800	1.4	84,724	8.2	증) 69,924
녹지 용지	463,684	46.3	598,739	58.2	증) 135,055
체육시설 용지	-	-	296,896	28.8	증) 296,896
건축시설 용지	-	-	22,539	2.2	증) 22,539
주거형 지구	438,125	43.7	-	-	감) 438,125
주거 용지	403,299	40.3	-	-	감) 403,299
공공시설 용지	23,400	2.3	-	-	감) 23,400
녹지 용지	11,426	1.1	-	-	감) 11,426

주) 기정 ① :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복합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일 : 2014.6.3.)  
금회 ② : 강릉 구정 골프&리조트 도시·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그림 1-4) 토지이용계획도 비교



##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제7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환경부, 2023」에 의거하여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 본 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환경기준, 계획의 성격,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 본 계획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표 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p><b>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b>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li> <li>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li> <li>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li> <li>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li> </ol>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p><b>제7조의2(환경보전목표의 설정)</b>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li> <li>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대기·수질환경·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li> <li>3. 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li> <li>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외에서 적용·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li> <li>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li> <li>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li> <li>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li> <li>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li> <li>4.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li> </ol>

## 2.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표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분야·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분야 및 항목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	환경보전목표	설정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계획 및 관련계획</li> <li>○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반영</li> <li>○환경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 등)</li> </ul>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의 환경적측면</li> <li>○토지이용구상의 효율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연계성 확보</li> <li>○토지이용 효율 극대화</li> <li>○토지이용 구상을 고려한 경계설정</li> </ul>	○대안비교를 통한 최적계획 도출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물다양성 보전</li> <li>○서식지 보전 및 복원(법정보호종 포함)</li> <li>○생태·자연도</li> <li>○생태계교란생물 출현현황 등 영향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보호지역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최소화</li> <li>○생태계교란생물 출현 규모 최소화</li> </ul>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보전</li> <li>○지형변화 최소화</li> <li>○토공량 발생정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황조사결과 계획지구 주변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및 주요 산줄기 등 확인되지 않음</li> <li>○토공량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량적 예측이 어려움</li> </ul>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분야·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분야 및 항목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	환경보전목표	설정사유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 환경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기준</li> <li>지자체 경관계획 및 지침, 경관조례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 지침 검토결과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li> <li>현장조사결과 주요 산줄기(능선축) 등이 위치하지 않음</li> </ul>	
	수환경보전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및 지자체 수질환경기준</li> <li>현재 수질현황</li> <li>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부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기준에 따른 수질환경기준</li> <li>-수질환경기준 초과시 현황농도 유지</li> <li>수환경 보전지역의 보전</li> <li>수질오염총량기준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훼손 최소화</li> <li>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준 유지달성 여부 검토</li> <li>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준수</li> </ul>	
나)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계획은 기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li> </ul>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대기환경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대기환경기준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시행으로 인해 환경기준 유지달성 여부 검토</li> <li>계획시행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li> </ul>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및 지자체 감축목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량적 예측이 어려움</li> </ul>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현황</li> <li>각종 법령 및 기타 소음·진동 기준</li> <li>환경정책기본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및 교통소음·진동 관리 준수</li> <li>「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음환경 기준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준 유지달성 여부 검토</li> </ul>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시행으로 인해 환경기준 유지달성 여부 검토</li> </ul>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분야·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분야 및 항목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	환경보전목표	설정사유
2) 입지의 타당성				
나)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오수·폐수, 폐기물 등 발생과 처리 시설 현황	○오·폐수,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적정성	○계획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 검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폐기물 발생현황	○폐기물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적정처리 검토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국가나 지자체의 국토관리 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목 등 국토에 관한 규제내용 및 기준 ○환경관련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전지역(지구)의 규제내용 및 기준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환경보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여부 검토

## 나. 환경영향평가

〈표 2-3〉 환경영향평가 평가분야·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분야 및 항목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	환경보전목표	설정사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지역 지정 및 동·식물상 분포 현황</li> <li>○ 자연환경보전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자연환경 목표기준</li> <li>○ 국가 및 지자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관련계획의 목표기준</li> <li>○ 국제기구 또는 주요 협약에서 정한 자연환경목표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보호지역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최소화</li> <li>○ 생태계교란생물 출현 규모 최소화</li> <li>○ 식생보전등급 I, II등급지역 보전 및 회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검토</li> <li>○ 양호한 식생구간 보전 및 보호</li> </ul>
대기환경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현황농도</li> <li>○ 국가 및 지자체의 대기환경기준</li> <li>○ 국가 및 지자체의 중장기 대기환경보전계획의 목표기준</li> <li>○ 대기오염총량관리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규제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기본법」 대기질 환경기준 미만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해 관련법령에 따른 환경기준 유지달성 여부 검토</li> <li>○ 사업시행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li> </ul>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보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의 상위 관련법과 환경보전대책에 부합하는 저감방안 수립·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해 관련법령 및 지침사항 고려</li> </ul>
수환경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자체의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대상지역의 수질현황</li> <li>○ 국가 및 지자체의 중장기 물환경보전계획의 목표 및 지표</li> <li>○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등 물환경관리지역의 지정 및 규제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SS(부유물질 농도) 100mg/L 이하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해 관련법령에 따른 환경기준 유지달성 여부 검토</li> </ul>
토지환경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li> <li>○ 국가 및 지자체의 토양보전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또는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해 관련법령에 따른 환경기준 유지달성 여부 검토</li> </ul>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평가분야·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분야 및 항목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	환경보전목표	설정사유
토지환경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지질 보전가치</li> <li>-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지정된 보호대상 여부와 보전등급</li> <li>○ 주요 산줄기 훼손 또는 단절 가능성</li> <li>○ 토공량(절·성토량) 발생 정도</li> <li>○ 토지환경 및 자연생태환경 등 다른 분야의 목표와 연계·통합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 보전 및 영향 고려</li> <li>○ 주변 지역의 지형적 여건과의 조화</li> <li>○ 녹지축 보전 및 훼손지역의 연결</li> <li>○ 백두대간 및 정맥 등 생태축 훼손여부</li> <li>○ 토공량(절·성토량) 균형</li> <li>○ 표고, 경사도, 절·성토사면 등을 고려한 지형변화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한 녹지축, 생태축 등 훼손여부 검토</li> <li>○ 과도한 토공계획으로 인한 지형변화 우려</li> </ul>
생활환경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현황</li> <li>○ 각종 법령에서 정한 소음·진동 기준</li> <li>-「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음환경기준</li> <li>-「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li> <li>-「학교보건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등</li> <li>○ 기타 소음·진동관련 기준 등</li> <li>-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li> <li>-소음·진동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 법원 판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관리법」에 제시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등을 목표기준으로 설정</li> <li>○ 「환경정책기본법」에 제시된 소음환경기준을 목표기준으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기준 유지달성 여부 검토</li> <li>○ 사업시행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li> </ul>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기준</li> <li>○ 국토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에서 규정한 법령 및 계획</li> <li>○ 지자체 경관계획 및 지침, 경관조례, 경관 가이드라인 등에 규정된 경관목표 및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산줄기 훼손 및 단절 방지하여 생태축 연결성 확보</li> <li>○ 지형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li> <li>○ 스카이라인, 거리별 자연경관 이질감 훼손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심의사항 고려</li> </ul>

##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제반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영향정도를 예측·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의 특성, 입지적 범위 및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주요 환경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

#### 가. 입지적 범위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0 일원
- 면 적 : 1,029,330㎡

#### 나.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 계획지구 내
- 간접영향권 : 주변 인접 영향권 및 인근 주거지역

#### 다. 시간적 범위

- 공사시 및 운영시

#### 라.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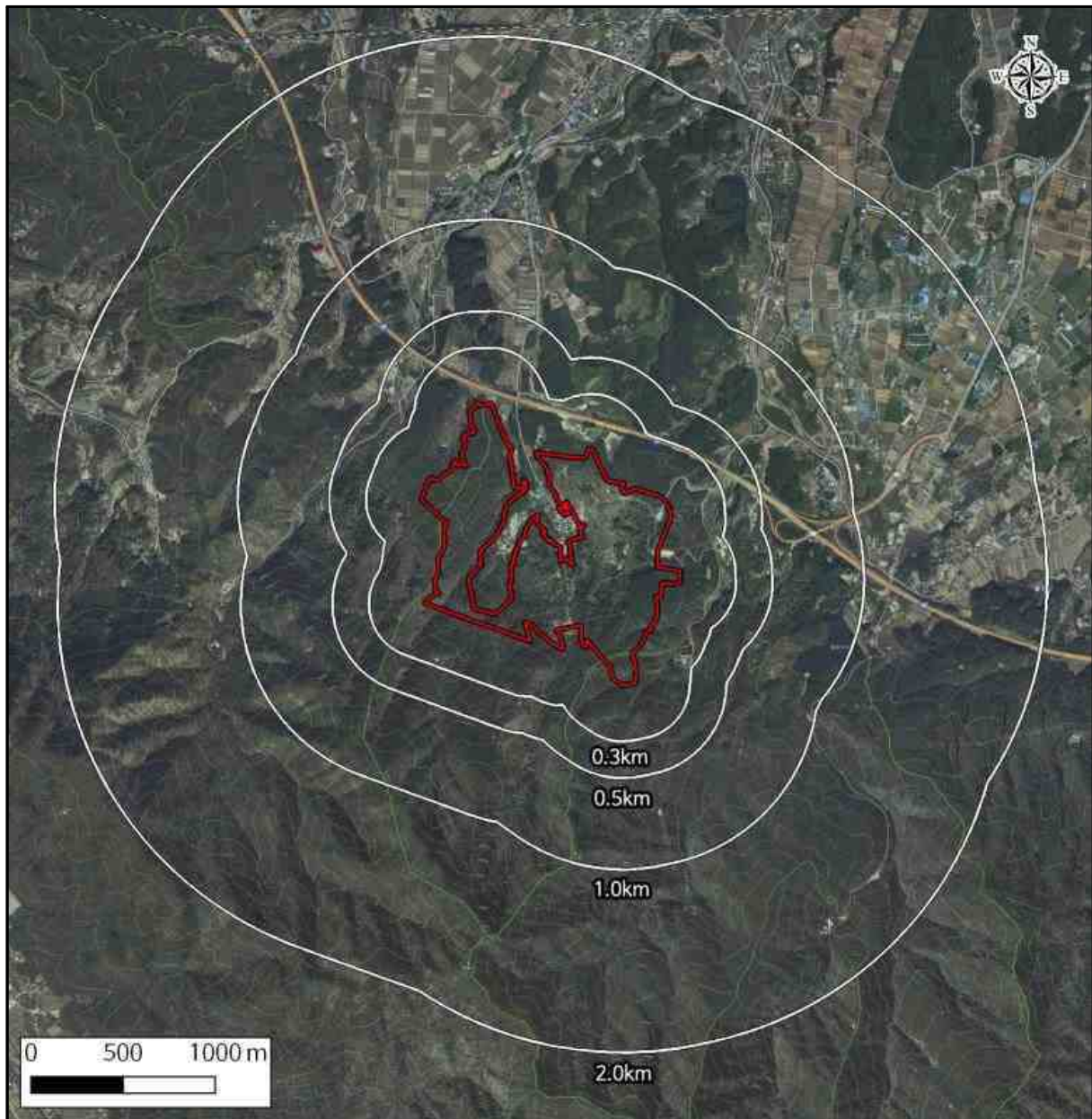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사업의 유형별·단계별로 환경영향을 주는 인자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부」를 참고하여 계획시행시 환경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평가항목별로 사업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함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선정사유

구 분		대상지역 선정 사유	평가대상범위		
			공간적	시간적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관련 계획의 일관성 및 연계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별 장·단점 비교를 통한 최적의 대안 선정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 식물상의 변화 및 동물의 서식지 훼손 및 이동 ○ 법정보호종의 영향	계획지구 및 주변 <b>0.5km 이내 지역</b>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보전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형상 변화 영향	계획지구	공사시	
	주변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계획지구 및 주변 2.0km 이내 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수계 영향 ○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영향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입지 의 타 당 성	생활 환경의 안전성	기 상	○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기상자료를 분석 하여 영향 예측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	주변 기상대	공사시
		대기질	○ 장비 운용 및 운영시 연료사용 등에 따른 대기질 영향	계획지구 및 주변 1.0km 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 장비 운용 및 운영시 연료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 장비 운용 및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소음 영향	계획지구 및 주변 0.3km 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토양	○ 장비 운용에 의한 폐유발생 ○ 농약 잔류량 영향 범위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분포 현황 분석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예측 및 분석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변화 분석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주)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밑줄로 표현하였음



구분	계획지구	주변수계	0.3km 이내	0.5km 이내	1.0km 이내	2.0km 이내	기타
공사시	지형 및 생태축보전, 온실가스, 토양,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수환경의 보전	소음·진동	생물다양성 · 서식지보전	대기질	-	기상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보전, 온실가스, 토양,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수환경의 보전	소음·진동	생물다양성 · 서식지보전	대기질	주변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기상

(그림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3.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제반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영향정도를 예측·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주요 검토항목별로 사업의 특성, 입지적 범위 및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주요 환경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

### 가. 입지적 범위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0 일원
- 면 적 : 1,029,330㎡

### 나.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 사업지구 내
- 간접영향권 : 주변 인접 영향권 및 인근 주거지역

### 다. 시간적 범위

- 공사시 및 운영시

### 라.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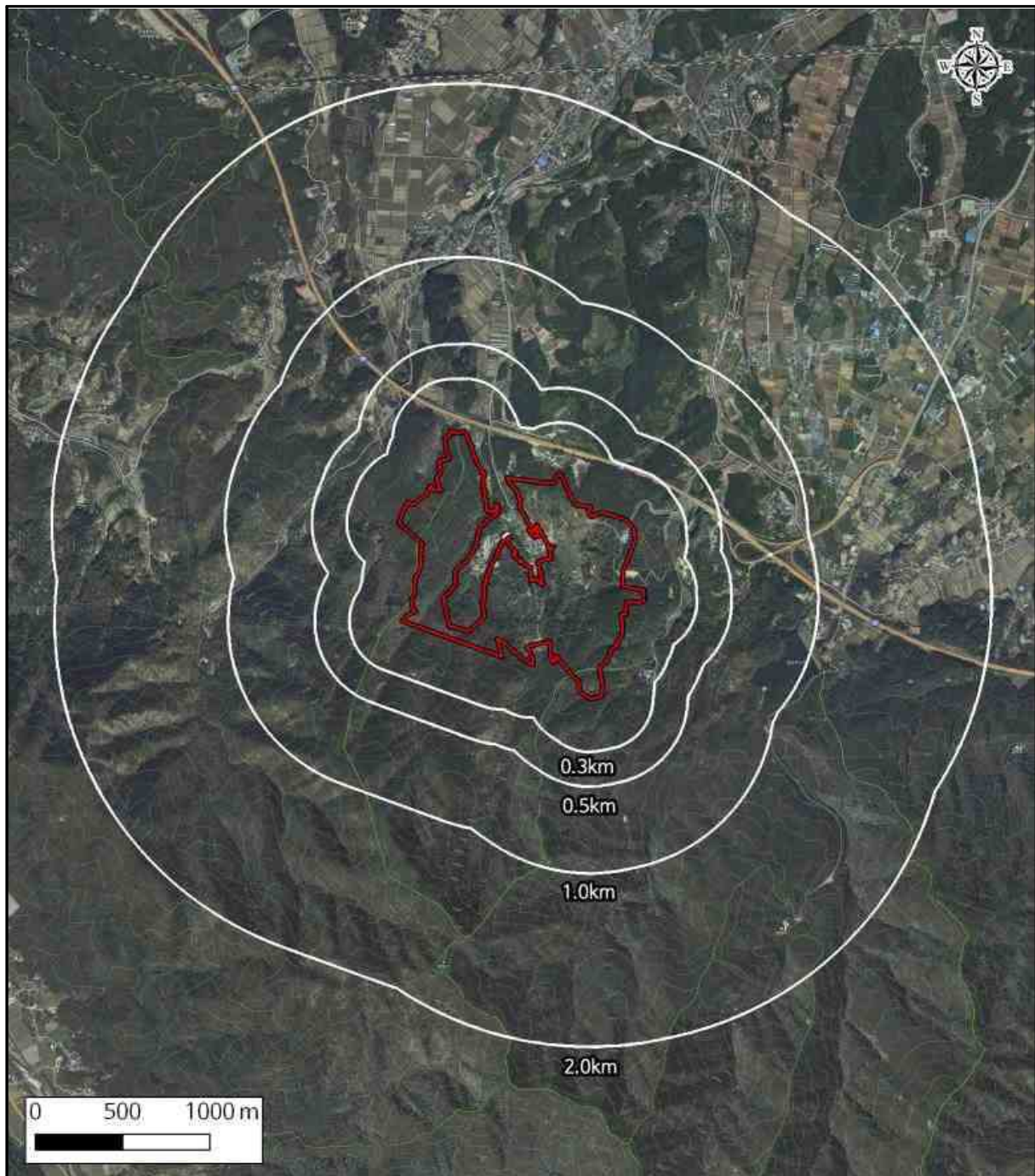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사업의 유형별·단계별로 환경영향을 주는 인자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 환경부」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시 환경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평가항목별로 사업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함

〈표 3-2〉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선정사유

구 분		대상지역 선정 사유	평가대상범위	
			공간적	시간적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식물상의 감소 ○동물의 서식지 훼손 및 이동 ○특정 야생생물 등 서식유무 파악 및 보호대책 수립	사업지구 및 주변 <b>0.5km 이내 지역</b>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자산의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 2.0km 이내 지역	공사시
대기 환경	기 상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대기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인근 기상대	공사시
	대기질	○부지조성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비 가동 의한 배기가스 발생 ○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지구 및 주변 1.0km 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온실가스 흡수원 훼손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난방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수환경	수질 (수리·수문)	○공사시 홍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작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용수·오수 처리, 비점오염원 처리구역 및 비료농약 사용으로 인한 영향 발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편입토지 발생, 지장물 철거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발생	사업지구	공사시
	토양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농약사용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상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지형·지질	○사업지구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지형훼손에 따른 토사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화 적정관리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및 폐기물 발생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의 발생 ○운영시 폐기물 발생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이동차량에 의한 소음발생	사업지구 및 주변 0.3km 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위락·경관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 2.0km 이내 지역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의 변화	사업지구	운영시

주)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밑줄로 표현하였음





구분	사업지구	주변수계	0.3km 이내	0.5km 이내	1.0km 이내	2.0km 이내	기타
공사시	온실가스,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수질	소음·진동	동·식물상	대기질	자연환경자산	기상
운영시	온실가스,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인구·주거	수질	소음·진동	동·식물상	대기질	위락·경관	기상

(그림 3-2)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제4장 토지이용 구상안

### 4.1 토지이용 현황

#### 가. 지목별 현황

- 계획지구 지목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면적 1,029,330㎡(100.0%) 중 임야 592,837㎡ (57.6%), 전 216,939㎡(21.1%), 목장용지 173,191㎡(16.8%)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4-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합계	임야	전	목장용지	잡종지	구거	하천	대지	묘지
필지수	159	61	60	21	9	2	1	3	2
면적(㎡)	1,029,330	592,837	216,939	173,191	28,391	14,046	576	2,117	1,233
구성비(%)	100.0	57.6	21.1	16.8	2.7	1.4	0.1	0.2	0.1

#### 나. 소유자별 현황

- 계획지구 소유자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면적 1,029,330㎡(100.0%) 중 사유지 1,014,708㎡(98.5%), 국유지 14,622㎡(1.5%)의 순으로 조사됨
- 계획지구 전체 159필지 중 사유지 156필지(98.1%), 국유지 3필지(1.9%)로 조사됨

〈표 4-2〉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 계	사유지	국유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 계
면 적	㎡	1,029,330	1,014,708	576	14,046	14,622
	구성비(%)	100	98.5	0.1	1.4	1.5
필지수	필지	159	156	1	2	3
	구성비(%)	100	98.1	0.6	1.3	1.9

## 4.2 토지이용 구상안

###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1,029,330	-	1,029,330	100.00
관리지역	계	1,007,512	증) 21,818	1,029,330	100.00
	계획관리지역	1,003,214	증) 26,116	1,029,330	100.00
	보전관리지역	4,298	감) 4,298	-	0.00
농림지역		21,818	감) 21,818	-	0.00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2-4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645	100이하	구정 골프앤리조트 조성을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2-5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53	100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1-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1,818	10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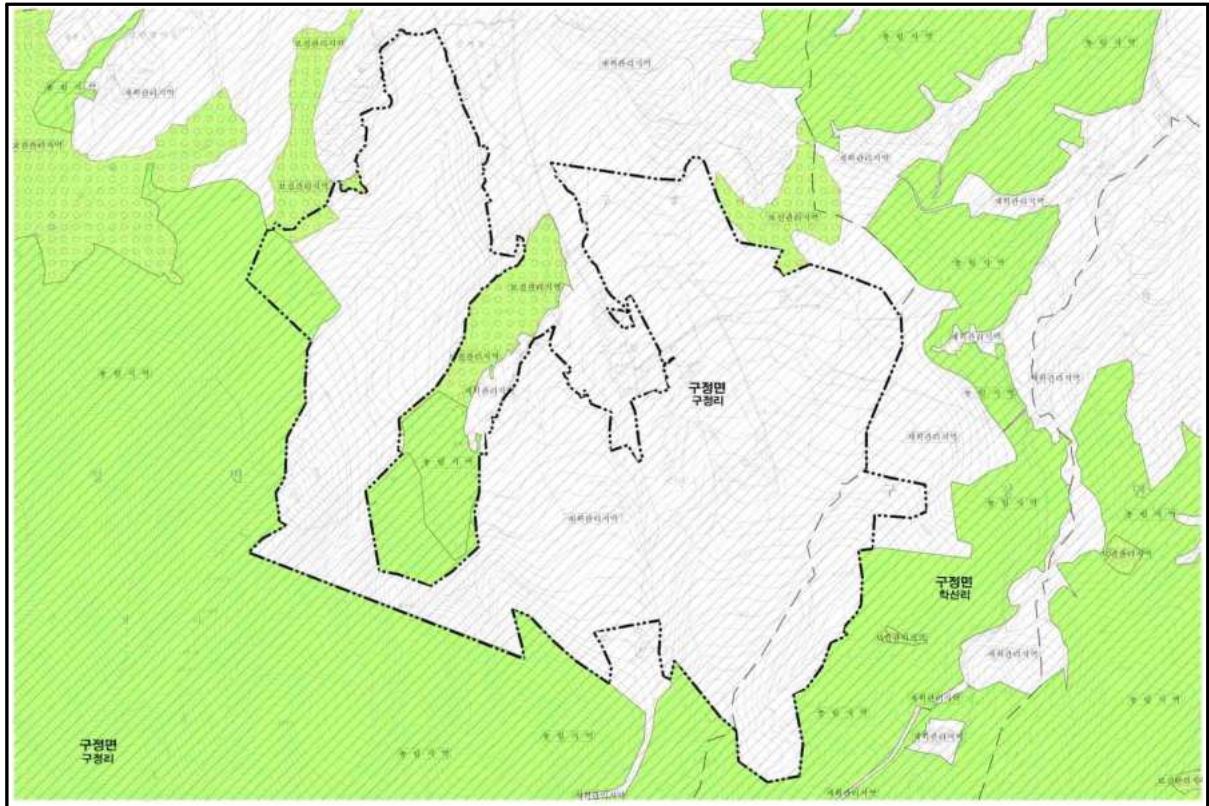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강릉복합단지	복합형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일원	1,002,909	감) 1,002,909	-
			주거형	구정면 구정리 37-84번지일원	438,125	감) 438,125	
			관광·휴양형	구정면 구정리 산66번지일원	564,784	감) 564,784	
변경	1	구정 골프&리조트	관광·휴양형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일원	-	증) 1,029,330	1,029,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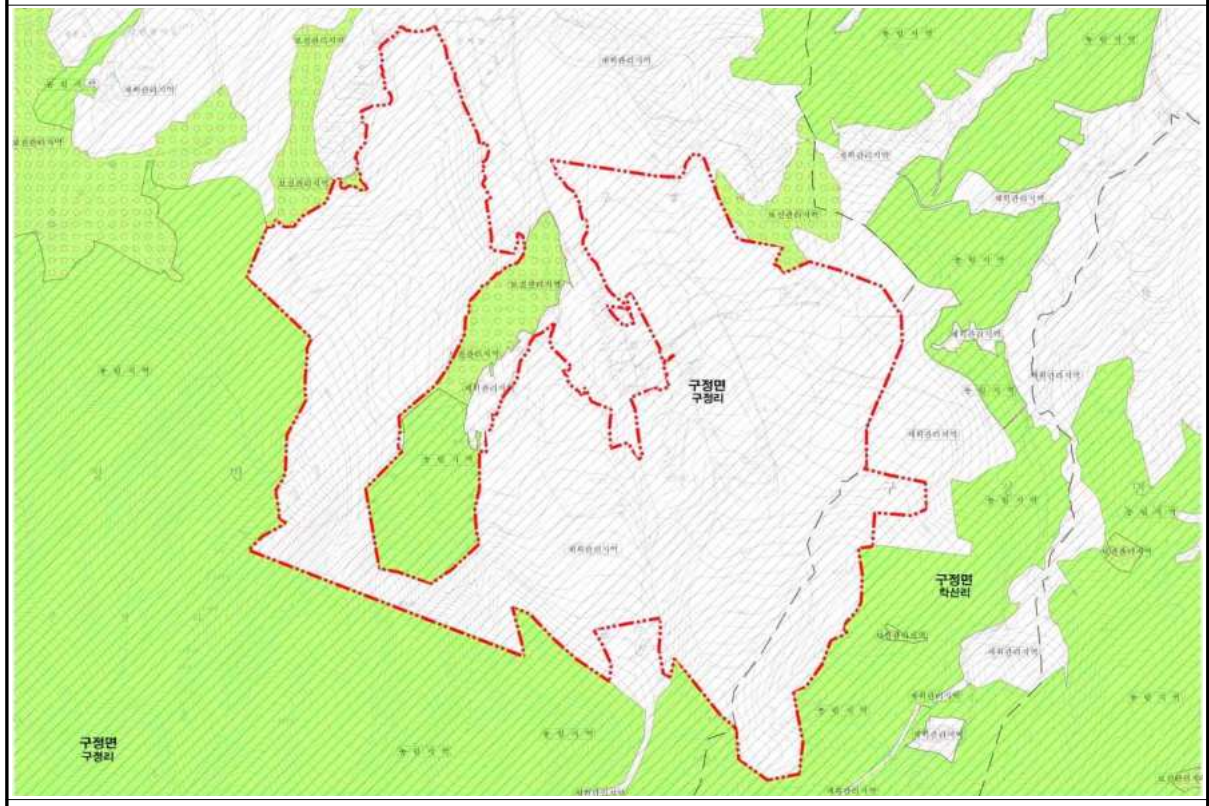
##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구정 골프&리조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형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li> <li>○ 구역계 변경 : 1,002,909㎡ → 1,029,330㎡ 증) 26,4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홀 대중제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하고자 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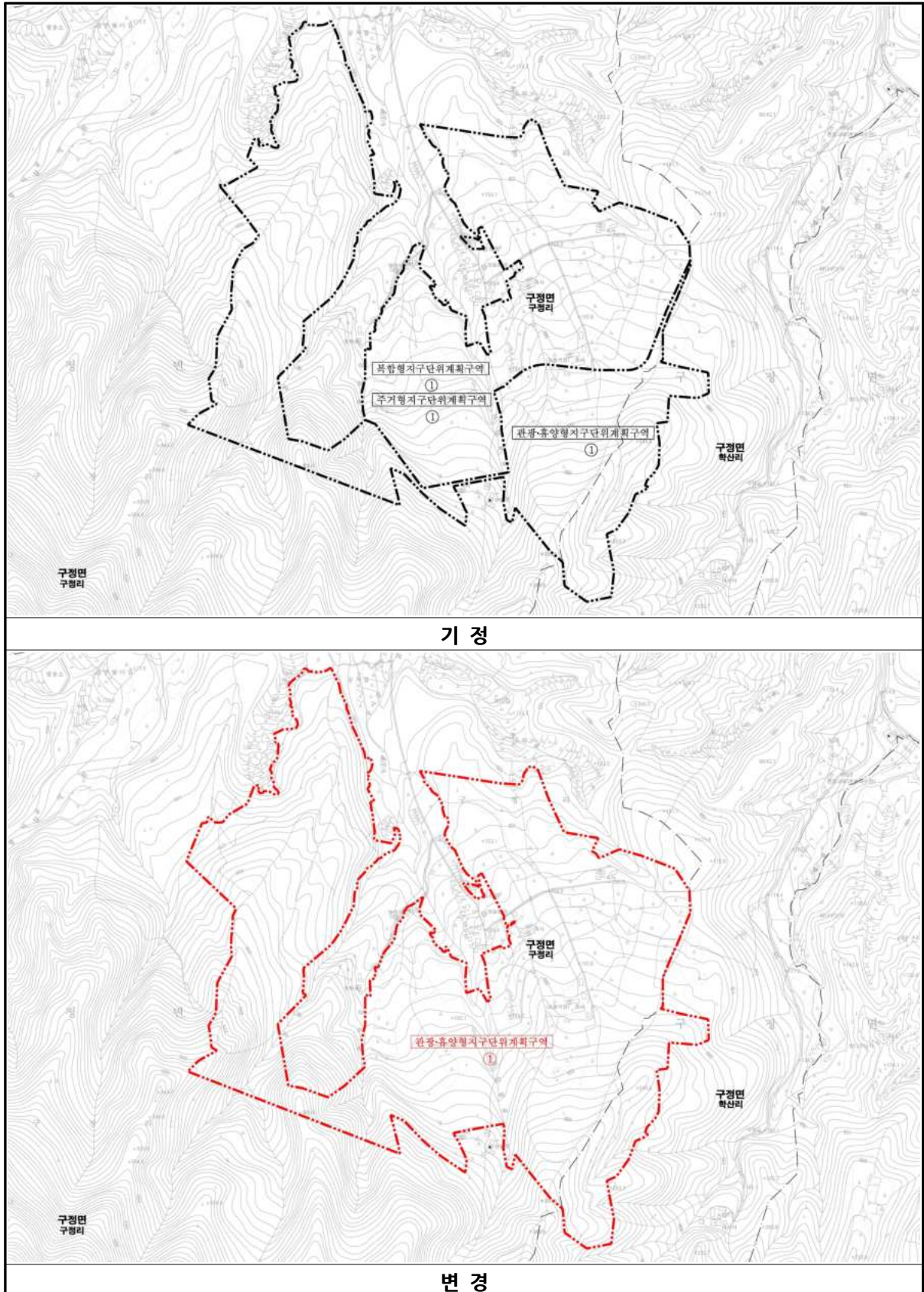
기 정



변 경

(그림 4-1)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그림 4-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나. 토지이용계획

- 금회 18홀 대중제 골프장 조성 및 골프텔, 숙박시설, 부대시설 등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함
-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복합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2014. 6) 기준 계획지구 면적은 1,002,909㎡에서 금회 1,029,330㎡로 변경됨
  - 전체면적 : 기정 1,002,909㎡ → 금회 1,029,330㎡ (증 26,421㎡)
  - 관광휴양시설 지구 : 기정 564,784㎡ → 금회 1,029,330㎡ (증 464,546㎡)
  - 주거형 지구 : 기정 438,125㎡ → 금회 0㎡ (감 438,125㎡)

〈표 4-3〉 토지이용계획 변경(총괄)

구 분	기정① (2014.9)		금회② (2024.3)		증·감 (②-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002,909	100.0	1,029,330	100.0	증) 26,421
관광·휴양시설 지구	564,784	56.3	1,029,330	100.0	증) 464,546
관광·휴양시설 용지	86,300	8.6	26,432	2.6	감) 59,868
공공시설 용지	14,800	1.4	84,724	8.2	증) 69,924
녹지 용지	463,684	46.3	598,739	58.2	증) 135,055
체육시설 용지	-	-	296,896	28.8	증) 296,896
건축시설 용지	-	-	22,539	2.2	증) 22,539
주거형 지구	438,125	43.7	-	-	감) 438,125
주거 용지	403,299	40.3	-	-	감) 403,299
공공시설 용지	23,400	2.3	-	-	감) 23,400
녹지 용지	11,426	1.1	-	-	감) 11,426

주) 기정 ① :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복합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일 : 2014.6.3.)  
 금회 ② : 강릉 구정 골프&리조트 도시·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표 4-4〉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부)

구 분	기정① (2014.9)		금회② (2024.3)		증·감 (②-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1,002,909	100.0	1,029,330	100.0	증) 26,421
A 관광휴양시설지구	564,784	56.3	1,029,330	100.0	증) 464,546
①관광휴양시설용지	86,300	8.6	26,432	2.6	감) 59,868
숙박시설	60,400	6.0	23,557	2.3	감) 36,843
부대시설	25,900	2.6	2,875	0.3	감) 23,025
②체육시설용지	-	-	296,896	28.8	증) 296,896
골프장	-	-	296,896	28.8	증) 296,896
③건축시설용지	-	-	22,539	2.2	증) 22,539
클럽하우스	-	-	22,539	2.2	증) 22,539
④공공시설용지	14,800	1.4	84,724	8.2	증) 69,924
도로	11,400	1.1	84,724	8.2	증) 73,324
유수지-6	3,400	0.3	-	0	감) 3,400
⑤녹지용지	463,684	46.3	598,739	58.2	증) 135,055
조성녹지	29,697	3.0	345,937	33.6	증) 316,240
원형보전지	433,987	43.3	252,802	24.6	감) 181,185
B 주거형지구	438,125	43.7	-	-	감) 438,125
①주거용지	403,299	40.3	-	-	감) 403,299
단독주택용지	23,478	2.3	-	-	감) 23,478
단독주택	14,279	1.4	-	-	감) 14,279
단독주택	14,279	1.4	-	-	감) 14,279
공공시설용지	4,965	0.5	-	-	감) 4,965
단지내도로	4,965	0.5	-	-	감) 4,965
녹지용지	4,234	0.4	-	-	감) 4,234
공원	1,699	0.2	-	-	감) 1,699
원형보전지	1,275	0.1	-	-	감) 1,275
조성녹지	1,260	0.1	-	-	감) 1,260
연립주택용지	118,507	11.8	-	-	감) 118,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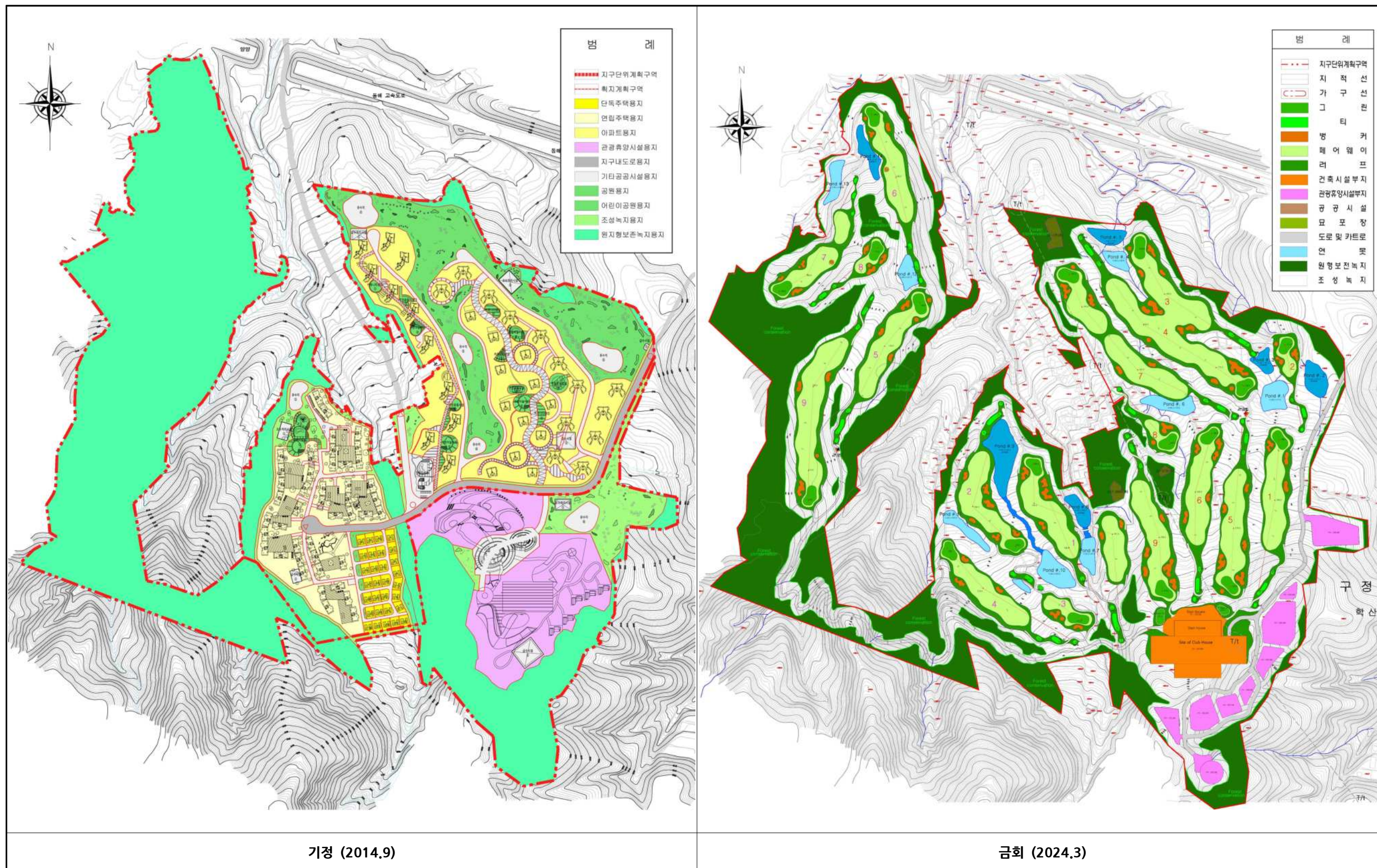
주) 기정 ① :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복합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금회 ② : 강릉 구정 골프&리조트 도시·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표 계속〉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부)

구 분	기정① (2014.9)		금회② (2024.3)		증·감 (②-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연립주택	70,300	7	-	-	감) 70,300
연립주택	70,300	7.0	-	-	감) 70,300
공공시설용지	11,800	1.2	-	-	감) 11,800
단지내도로	6,650	0.7	-	-	감) 6,650
유수지-1	1,750	0.2	-	-	감) 1,750
어린이공원	3,400	0.3	-	-	감) 3,400
녹지용지	36,407	3.6	-	-	감) 36,407
조성녹지	10,453	1.0	-	-	감) 10,453
원형보전지	25,954	2.6	-	-	감) 25,954
아파트용지	261,314	26.2	-	-	감) 261,314
아파트	106,860	10.7	-	-	감) 106,860
아파트	106,860	10.7	-	-	감) 106,860
공공시설용지	49,030	4.9	-	-	감) 49,030
단지내도로	38,040	3.8	-	-	감) 38,040
유수지-2~5	10,990	1.1	-	-	감) 10,990
녹지용지	105,424	10.6	-	-	감) 105,424
원형보전지	16,014	1.6	-	-	감) 16,014
어린이놀이터	4,850	0.5	-	-	감) 4,850
공원	75,760	7.6	-	-	감) 75,760
조성녹지	2,200	0.2	-	-	감) 2,200
커뮤니티광장	2,600	0.3	-	-	감) 2,600
주민운동시설	4,000	0.4	-	-	감) 4,000
②공공시설용지	23,400	2.3	-	-	감) 23,400
종로	19,100	1.9	-	-	감) 19,100
작은도서관	4,300	0.4	-	-	감) 4,300
③녹지용지	11,426	1.1	-	-	감) 11,426
조성녹지	1,441	0.1	-	-	감) 1,441
원형보전지	9,985	1.0	-	-	감) 9,985

주) 기정 ① :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복합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일 : 2014.6.3.)  
 금회 ② : 강릉 구정 골프&리조트 도시·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그림 4-3) 토지이용계획도 비교



**다. 세부 시설별 변경내용**

**1) 관광·휴양시설 지구**

**가) 관광·휴양시설 용지 (변경)**

○ 기정 86,300㎡ → 금회 26,432㎡ (감 59,868㎡)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2014.9)	금 회 (2024.3)	증·감 (②-①)	
관광·휴양시설 용지	86,300	26,432	감) 59,868	2.6
숙박시설	60,400	23,557	감) 36,843	2.3
부대시설	25,900	2,875	감) 23,025	0.3

**나) 공공시설 용지 (변경)**

○ 기정 14,800㎡ → 금회 84,724㎡ (증 69,924㎡)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2014.9)	금 회 (2024.3)	증·감 (②-①)	
공공시설 용지	14,800	84,724	증) 69,924	8.2
도로	11,400	84,724	증) 73,324	8.2
유수지	3,400	-	감) 3,400	0.0

**다) 녹지 용지 (변경)**

○ 기정 463,684㎡ → 금회 598,739㎡ (증 135,055㎡)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2014.9)	금 회 (2024.3)	증·감 (②-①)	
녹지 용지	463,684	598,739	증) 135,055	258.2
조성녹지	29,697	345,937	증) 316,240	33.6
원형보전지	433,987	252,802	감) 181,185	24.6

## 라) 체육시설 용지 (신설)

○ 기정 0㎡ → 금회 296,896㎡ (증 296,896㎡)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2014.9)	금 회 (2024.3)	증·감 (②-①)	
체육시설 용지	-	296,896	증) 296,896	28.8
골프장	-	296,896	증) 296,896	28.8

## 마) 건축시설 용지 (신설)

○ 기정 0㎡ → 금회 22,539㎡ (증 22,539㎡)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2014.9)	금 회 (2024.3)	증·감 (②-①)	
건축시설 용지	-	22,539	증) 22,539	2.2
클럽하우스	-	22,539	증) 22,539	2.2

## 2) 주거형 지구

## 가) 주거 용지 (폐지)

○ 기정 403,299㎡ → 금회 0㎡ (감 403,299㎡)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2014.9)	금 회 (2024.3)	증·감 (②-①)	
주거 용지	403,299	-	감) 403,299	-
단독주택 용지	23,478	-	감) 23,478	-
연립주택 용지	118,507	-	감) 118,507	-
아파트 용지	261,314	-	감) 261,314	-



## 나) 공공시설 용지 (폐지)

○ 기정 23,400㎡ → 금회 0㎡ (감 23,400㎡)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2014.9)	금 회 (2024.3)	증·감 (②-①)	
공공시설 용지	23,400	-	감) 23,400	-
중로	19,100	-	감) 19,100	-
작은도서관	4,300	-	감) 4,300	-

## 다) 녹지 용지 (폐지)

○ 기정 11,426㎡ → 금회 0㎡ (감 11,426㎡)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2014.9)	금 회 (2024.3)	증·감 (②-①)	
녹지 용지	11,426	-	감) 11,426	-
조성녹지	1,441	-	감) 1,441	-
원보전지	9,985	-	감) 9,985	-

## 제5장 대안의 설정

### 5.1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2, 환경부」를 참조함
- 금회 계획에 대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의 건전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획·비교”, 계획입지를 검토한 “입지비교” 측면에서 대안을 설정하였음

####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가.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제1항제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가지 설정 가능한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유·무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들을 대안으로 설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입지	○ 공간구상 및 전략,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안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 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 2, 환경부

## 가. 대안의 설정

-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한 계획비교 대안 및 대상입지와 계획지구를 변경·조정하는 입지비교 안을 검토함

대안종류	선정기준	내 용	
계획비교	계획수립여부	1안	○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No Action)
		2안	○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입지비교	토지이용계획 합리성	1안	○ 총 면적 : 1,050,600㎡ -관광·휴양시설 용지 미확보
		2안	○ 총 면적 : 1,029,330㎡ -관광·휴양시설 용지 확보

### 1) 계획비교

- 본 계획 수립시 18홀 골프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수립,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획2안(Action)을 선정함

〈표 5-1〉 계획의 대안별 검토내용

구 분	계획1안 (No Action)	계획2안 (Action)																								
사업 내용	○ 개발방향 -미개발	○ 개발방향 -골프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대중제 18홀 계획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함께 이용해야 하는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용지 확보																								
토지 이용 계획	○ 토지이용계획 -미수립 ○ 현상유지 -기존 목장유지 및 경작지 유지	○ 금회 토지이용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면적(㎡)</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1,029,330</td> <td>100.0</td> </tr> <tr> <td>관광·휴양시설 지구</td> <td>1,029,330</td> <td>100.0</td> </tr> <tr> <td>  관광·휴양시설 용지</td> <td>26,432</td> <td>2.6</td> </tr> <tr> <td>  공공시설 용지</td> <td>84,724</td> <td>8.2</td> </tr> <tr> <td>  녹지 용지</td> <td>598,739</td> <td>58.2</td> </tr> <tr> <td>  체육시설 용지</td> <td>296,896</td> <td>28.8</td> </tr> <tr> <td>  건축시설 용지</td> <td>22,539</td> <td>2.2</td> </tr> </tbody> </table>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029,330	100.0	관광·휴양시설 지구	1,029,330	100.0	관광·휴양시설 용지	26,432	2.6	공공시설 용지	84,724	8.2	녹지 용지	598,739	58.2	체육시설 용지	296,896	28.8	건축시설 용지	22,539	2.2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029,330	100.0																								
관광·휴양시설 지구	1,029,330	100.0																								
관광·휴양시설 용지	26,432	2.6																								
공공시설 용지	84,724	8.2																								
녹지 용지	598,739	58.2																								
체육시설 용지	296,896	28.8																								
건축시설 용지	22,539	2.2																								
장단점	○ 현상유지를 통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변화 없이 존치 ○ 체계없는 계획 개발시 난개발의 우려 ○ 토지의 활용가치 낮음 ○ 토지소유주의 불편 및 민원 발생	○ 합리적 토지이용 구상 및 공간배분 유도 ○ 골프장 이용객의 휴양,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증가하는 골프수요 충족 ○ 주거형지구를 폐지하고 녹지조성을 통한 경관 영향 최소화																								
선정안	-	○																								



(그림 5-1) 계획 대안 비교(계획 1안, No action)





(그림 5-2) 계획 대안 비교(계획 2안, action)



## 2) 입지비교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안별 합리적 토지이용 구상 및 합리적 공간배분 유도
  - 증가하는 골프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대중제 18홀을 계획하는 토지이용 구상
  -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함께 이용해야 하는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용지 확보
- 증가하는 골프수요를 충족하고 관광·휴양시설 용지 및 녹지 확보가 가능한 입지2안을 선정함

〈표 5-2〉 입지에 따른 대안별 토지이용계획

구분		입지1안 (2011년 기 골프장 협의시)		입지2안 (금회)	
		부지면적(㎡)	구성비(%)	부지면적(㎡)	구성비(%)
총계		1,050,600	100.0	1,029,330	100.0
관광·휴양시설 용지	소계	0	0.0	26,432	2.6
	숙박시설	0	-	26,432	-
공공시설용지	소계	105,450	10.0	84,724	8.2
	공공시설	105,450	-	84,724	-
녹지용지	소계	601,770	57.3	598,739	58.2
	조성녹지	284,016	27.0	345,937	33.6
	원형녹지	317,754	30.3	252,802	24.6
체육시설 용지	소계	311,630	29.7	296,896	28.8
	골프코스시설	311,630	-	296,896	-
건축시설 용지	소계	31,750	3.0	22,539	2.2
	건축시설	31,750	-	22,539	-

주) 입지1안 : 강릉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일 : 2011.6.16)

입지2안 : 강릉 구정 골프&리조트 도시·군관라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구분	입지1안	입지2안																																																																																																																																																												
토지이용 계획도	<table border="1"> <caption>CARD OF THE COURSE (Option 1)</caption> <thead> <tr> <th>HOLE</th> <th>DISTANCE</th> <th>PAR</th> <th>HOLE</th> <th>DISTANCE</th> <th>PAR</th> </tr> </thead> <tbody> <tr><td>1</td><td>365</td><td>4</td><td>10</td><td>360</td><td>4</td></tr> <tr><td>2</td><td>410</td><td>4</td><td>11</td><td>140</td><td>3</td></tr> <tr><td>3</td><td>490</td><td>5</td><td>12</td><td>375</td><td>4</td></tr> <tr><td>4</td><td>375</td><td>4</td><td>13</td><td>200</td><td>3</td></tr> <tr><td>5</td><td>340</td><td>4</td><td>14</td><td>380</td><td>4</td></tr> <tr><td>6</td><td>190</td><td>3</td><td>15</td><td>465</td><td>5</td></tr> <tr><td>7</td><td>500</td><td>5</td><td>16</td><td>135</td><td>3</td></tr> <tr><td>8</td><td>450</td><td>4</td><td>17</td><td>475</td><td>5</td></tr> <tr><td>9</td><td>370</td><td>4</td><td>18</td><td>390</td><td>4</td></tr> <tr><td>S/T</td><td>3,490</td><td>37</td><td>S/T</td><td>2,920</td><td>35</td></tr> <tr><td>G/T</td><td>6,410m</td><td>par72</td><td></td><td></td><td></td></tr> <tr><td>Yards</td><td>7,010yds</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HOLE	DISTANCE	PAR	HOLE	DISTANCE	PAR	1	365	4	10	360	4	2	410	4	11	140	3	3	490	5	12	375	4	4	375	4	13	200	3	5	340	4	14	380	4	6	190	3	15	465	5	7	500	5	16	135	3	8	450	4	17	475	5	9	370	4	18	390	4	S/T	3,490	37	S/T	2,920	35	G/T	6,410m	par72				Yards	7,010yds					<table border="1"> <caption>CARD OF THE COURSE (Option 2)</caption> <thead> <tr> <th>HOLE</th> <th>DISTANCE</th> <th>PAR</th> <th>HOLE</th> <th>DISTANCE</th> <th>PAR</th> </tr> </thead> <tbody> <tr><td>1</td><td>360</td><td>4</td><td>10</td><td>495</td><td>5</td></tr> <tr><td>2</td><td>185</td><td>3</td><td>11</td><td>355</td><td>4</td></tr> <tr><td>3</td><td>345</td><td>4</td><td>12</td><td>180</td><td>3</td></tr> <tr><td>4</td><td>480</td><td>5</td><td>13</td><td>345</td><td>4</td></tr> <tr><td>5</td><td>355</td><td>4</td><td>14</td><td>350</td><td>4</td></tr> <tr><td>6</td><td>360</td><td>4</td><td>15</td><td>375</td><td>4</td></tr> <tr><td>7</td><td>485</td><td>5</td><td>16</td><td>305</td><td>4</td></tr> <tr><td>8</td><td>160</td><td>3</td><td>17</td><td>185</td><td>3</td></tr> <tr><td>9</td><td>345</td><td>4</td><td>18</td><td>475</td><td>5</td></tr> <tr><td>S/T</td><td>3,075</td><td>36</td><td>S/T</td><td>3,065</td><td>36</td></tr> <tr><td>G/T</td><td>6,140m</td><td>par72</td><td></td><td></td><td></td></tr> <tr><td>Yards</td><td>6,713yds</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HOLE	DISTANCE	PAR	HOLE	DISTANCE	PAR	1	360	4	10	495	5	2	185	3	11	355	4	3	345	4	12	180	3	4	480	5	13	345	4	5	355	4	14	350	4	6	360	4	15	375	4	7	485	5	16	305	4	8	160	3	17	185	3	9	345	4	18	475	5	S/T	3,075	36	S/T	3,065	36	G/T	6,140m	par72				Yards	6,713yds				
HOLE	DISTANCE	PAR	HOLE	DISTANCE	PAR																																																																																																																																																									
1	365	4	10	360	4																																																																																																																																																									
2	410	4	11	140	3																																																																																																																																																									
3	490	5	12	375	4																																																																																																																																																									
4	375	4	13	200	3																																																																																																																																																									
5	340	4	14	380	4																																																																																																																																																									
6	190	3	15	465	5																																																																																																																																																									
7	500	5	16	135	3																																																																																																																																																									
8	450	4	17	475	5																																																																																																																																																									
9	370	4	18	390	4																																																																																																																																																									
S/T	3,490	37	S/T	2,920	35																																																																																																																																																									
G/T	6,410m	par72																																																																																																																																																												
Yards	7,010yds																																																																																																																																																													
HOLE	DISTANCE	PAR	HOLE	DISTANCE	PAR																																																																																																																																																									
1	360	4	10	495	5																																																																																																																																																									
2	185	3	11	355	4																																																																																																																																																									
3	345	4	12	180	3																																																																																																																																																									
4	480	5	13	345	4																																																																																																																																																									
5	355	4	14	350	4																																																																																																																																																									
6	360	4	15	375	4																																																																																																																																																									
7	485	5	16	305	4																																																																																																																																																									
8	160	3	17	185	3																																																																																																																																																									
9	345	4	18	475	5																																																																																																																																																									
S/T	3,075	36	S/T	3,065	36																																																																																																																																																									
G/T	6,140m	par72																																																																																																																																																												
Yards	6,713yds																																																																																																																																																													
환경적 측면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홀 골프장 조성으로 급증하는 골프수요 충족</li> <li>○ 원형보전녹지 비율이 2안 대비 약 5.7% 높아서 비교적 자연훼손 감소</li> <li>○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환경친화적 공간연출 및 경관적 쾌적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홀 골프장 조성으로 급증하는 골프수요 충족</li> <li>○ 대상지 서측 경계부를 원형보전녹지로 조성하여 <b>산림부와의 연속성으로 야생동물 이동경로 확보</b></li> <li>○ <b>체류형 숙박시설 확충</b>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li> <li>○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관광·휴양시설 확보</li> <li>○ 전체적인 녹지용지 비율이 1안 대비 약 1.1% 높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 서측 산림부에서 <b>골프코스 부지를 지나 원형보전녹지가 위치하여 야생동물 이동경로에 부정적 영향</b></li> <li>○ 체류형 숙박시설 미비로 인한 관광 경제력 약화 및 지역경제 발전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 인접한 마을에서의 골프장 조망 우려</li> <li>○ 계획지구 남서측 <b>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계획지구에서 제척하여 원형보전녹지 비율이 약 5.7% 감소</b></li> </ul>																																																																																																																																																											
종합평가	○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수립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개발 방향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관광으로 활발한 지역경제 촉진 등을 고려하여 대안2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음																																																																																																																																																													
선정(안)		○																																																																																																																																																												

(그림 5-3) 입지안 비교

## 5.2 최종안 선정

- 본 계획은 강릉 구정 골프&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중제 18홀 골프장 조성과 함께 관광휴양시설용지를 확보하여 골프장 이용객의 휴양,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증가하는 골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2안(Action)을 선정함**
- 입지적정성 등 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2안을 적정안으로 선정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안별 합리적 토지이용 구상 및 합리적 공간배분 유도
- 상기 내용을 종합한 결과, 계획지구 조성시 합리적인 시설용지 배치계획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을 최종안으로 선정함

〈표 5-3〉 최종안 선정

대안종류	선정기준	최종안			
계획비교	계획수립여부	계획 2안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입지비교	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평가	입지 2안	○ 토지이용계획		
			<b>구 분</b>	<b>면적(㎡)</b>	<b>구성비(%)</b>
			합 계	1,029,330	100.0
			관광·휴양시설 지구	1,029,330	100.0
			관광·휴양시설 용지	26,432	2.6
			공공시설 용지	84,724	8.2
			녹지 용지	598,739	58.2
체육시설 용지	296,896	28.8			
건축시설 용지	22,53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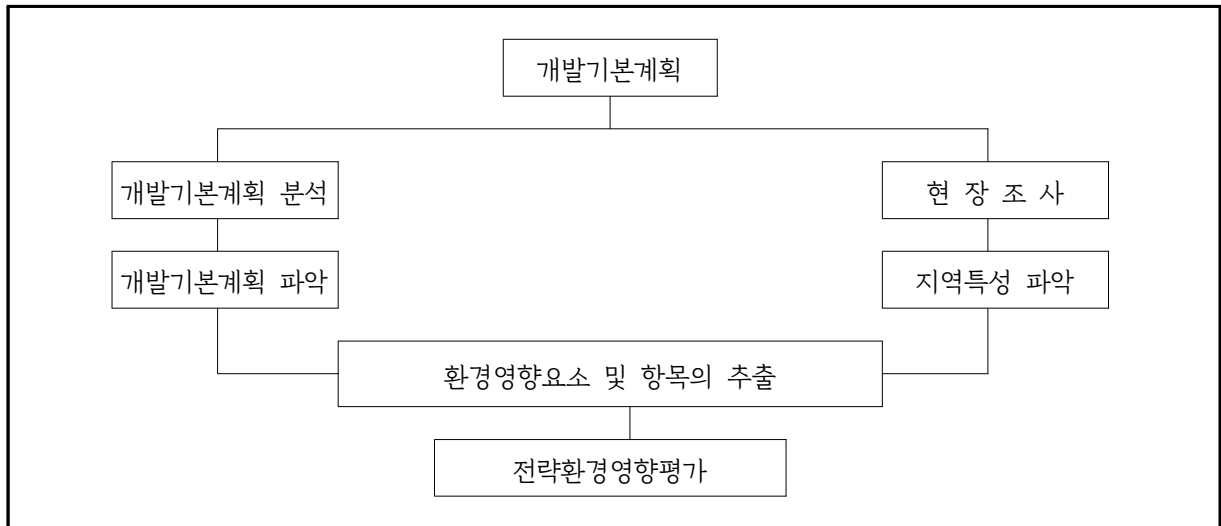
## 제6장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등의 설정

### 6.1 평가항목

- 환경영향 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환경영향 인자와 환경영향 항목을 분석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항목을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함

#### 가.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환경영향요소는 계획지구 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영향권까지 포함하여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향요소를 추출함



(그림 6-1)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 나. 평가항목의 선정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 환경부」 및 유사 협의사례, 토지이용 현황, 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요 평가항목(안)을 설정함



〈표 6-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선정 및 선정사유

평가항목		중점 평가	일반 평가	평가 제외	선정(제외)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	-	-	-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		○	-	-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	-	○계획 수립 전·후에 대한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	-	-	-	
가)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	-	○계획 수립 전·후의 식물상 변화 및 동물의 서식지 훼손 및 이동 ○법정보호종의 영향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	-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및 비탈면 발생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	-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운영시 오수발생, 비점오염물질 발생	
나)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	-	○계획의 특성상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대기질 등 영향예측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	○공사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및 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연료사용 및 유발교통량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
		악취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온실가스	-	○	-	○공사장비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운영시 연료사용, 전력사용 및 유발교통량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
		소음·진동	○	-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소음 발생
		토양	-	○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폐유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운영시 농약 및 비료사용에 의한 영향
		일조장해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시설 적정성 검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	-	○공사시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발생 ○운영시 생활·사업장 폐기물 등 발생	
다) 사회·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 2)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 환경부」 및 사업의 특성, 토지이용 현황, 인근지역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향 예상 항목을 주요 평가 항목(안)으로 설정함

〈표 6-2〉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선정 및 선정 사유

평가항목		중점 평가	일반 평가	평가 제외	선정(제외) 사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사업시행시 식생, 동물서식지 영향여부 및 동·식물상 변화
	자연환경자산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 유무 파악
대기 환경	기상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취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 미미
	온실가스	○	-	-	○공사장비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운영시 연료사용, 전력사용 및 유발교통량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
수환경	수질	○	-	-	○공사시 토사유출, 오수 방류로 인한 수계영향 ○운영시 우·오수처리 등 주변 수계영향 발생
	수리·수문	-	○	-	○수질편에 검토
	해양환경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 미미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토양	○	-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폐유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운영시 농약 및 비료사용에 의한 영향
	지형·지질	○	-	-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및 비탈면 발생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소음·진동	○	-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소음 발생
	위락·경관	○	-	-	○골프장 및 건축물로 인한 경관 변화
	일조장해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 미미
	위생·공중보건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 미미
	전파장해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 미미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계획지구 이용인구 발생
	산업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 미미

가)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에 대한 영향 및 관련성과 크기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하였음

〈표 6-3〉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

환경영향요소		환경항목	자연 생태 환경		대기환경			수 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동·식물상	자연 환경 자산	기상	대기 질	온실 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 이용	토 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인구·주거
공사시	자연형질 변경	수목의 벌채	○	△			□	□							△
		절·성토 등 지형변화	○	□				□	△	△	□				△
		토지점용		□					△						
	토공 및 시설 공사	토공기초작업	△			□	△	□						□	
		건축물 공사	△			□	△					△	□		
		조경식재	▲			▲	▲		■	▲					
		인부 및 장비투입				□	△	△		△		△	□		△
운영시	폐기물 발생	△								△	△				
	오·폐수 발생						□				△				
	건축물 입지				△					△	△	△	△		
	차량 운행				□										
	지역경제변화								■					▲	■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 기준]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 악영향이 다소 있다(보통정도이다).							
▲ : 개발되면 긍정적이거나 크기가 적다.								○ : 악영향이 크다.							

## 6.2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표 6-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 분	평가항목	현장조사	영향예측 방법
생물다양성 · 서식지보전	동· 식물상	① 조사내용 : 자연현황(식생현황,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b>0.5km이내</b>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보전해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하여 보호대상이 계획시행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 ·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지역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을 예측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① 조사내용 : 경관영향 예상지역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2.0k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을 선정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예측 ○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에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시
수 환경의 보전	수 질	① 조사내용 : 수계, 하천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5지점, 지하수질 2지점 ⑤ 조사항목 - 지표수질 : pH, BOD, SS, DO, COD, TOC 등 - 지하수질 : pH, NH <sub>3</sub> -N, CN, Cr <sup>6+</sup> , Pb, As 등	○ 토사유출에 의한 계획지구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원단위 및 경험식을 활용하여 공사시 토사유출, 현장사무소 오수발생량 예측 ○ 운영시 오수발생량 예측 ○ 운영시 비점오염원 영향예측
생활 환경의 안전성	기상	① 조사계획 - 조사내용 : 계획지구 인근 최근 10년 기상자료 -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문헌조사
	대기질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0km이내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4지점 ⑤ 조사항목(8개항목) : PM-10, PM-2.5, NO <sub>2</sub> , SO <sub>2</sub> , CO, O <sub>3</sub> , Pb, 벤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대기 확산모델 이용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 분	평가항목	현장조사	영향예측 방법
생활 환경의 안전성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환경기준 항목의 대기오염도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온실가스의 배출량원단위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소음 · 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의 상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0.3km이내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4지점 ⑤ 조사항목(2개항목) - 소음, 진동	○ 공사시 장비가동,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도로소음영향 예측
	토양	① 조사내용 : 환경기준항목의 현황 농도 및 폐유발생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2지점 ⑤ 조사항목 - Cd, Cu As, Hg, Pb, Cr <sup>6+</sup> , Zn 등	○ 토양오염원에 따른 영향을 정성적으로 예측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영향예측
	환경 기초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 환경기초시설 연계 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생활폐기물, 분뇨발생 예측 ○ 건설폐기물 성상 및 발생 예측
사회· 경제환경과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지목별 토지이용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상의 변화

## 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표 6-5〉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분	평가항목	현장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 자연현황(식생현황,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b>0.5km이내</b>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보전해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하여 보호대상이 사업시행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자연환경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현황 (문화재, 환경관련 보호구역 등)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0km이내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기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황파악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영향 예측
대기환경	기상	① 조사계획 - 조사내용 : 사업지구 인근 최근 10년 기상자료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기상현황 분석
	대기질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0km이내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4지점 ⑤ 조사항목(8개항목) : PM-10, PM-2.5, NO <sub>2</sub> , SO <sub>2</sub> , CO, O <sub>3</sub> , Pb, 벤젠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대기 확산모델 이용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환경기준 항목의 대기오염도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온실가스의 배출량원단위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
수환경	수질 (수리·수문)	① 조사내용 : 수계, 하천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5지점, 지하수질 2지점 ⑤ 조사항목 - 지표수질 : pH, BOD, SS, DO, COD, TOC 등 - 지하수질 : pH, NH <sub>3</sub> -N, CN, Cr <sup>6+</sup> , Pb, As 등	○ 토사유출에 의한 인근하천에 미치는 영향 예측 ○ 공사시 토사유출, 현장사무소 오수발생량 산정 ○ 운영시 생활오수 및 비점오염원 발생 예측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분	평가항목	현장조사	영향예측 방법
토 지 환 경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지목별 토지이용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 전·후 토지이용상의 변화
	토양	① 조사내용 : 환경기준항목의 현황 농도 및 폐유발생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2지점 ⑤ 조사항목 - Cd, Cu, As, Hg, Pb, Cr <sup>6+</sup> , Zn 등	○ 토양오염원에 따른 영향을 정성적으로 예측 ○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영향 예측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지역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예측
생 활 환 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생활폐기물, 분뇨발생 예측 ○ 건설폐기물 성상 및 발생 예측 ○ 운영시 농약, 비료사용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의 상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0.3km이내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4지점 ⑤ 조사항목(2개항목) - 소음, 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영향 예측 ○ 소음·진동 영향예상 지역에 소음·진동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영향정도 실시
	위락·경관	① 조사내용 : 경관영향 예상지역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0km이내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자연의 훼손 정도, 조망의 변화 예측 ○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에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시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및 변화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의 변화

### 6.3 환경영향 조사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소음·진동, 토양 등) 조사지점을 선정하였음
- 측정지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동일하게 선정하였으며, 현장여건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지점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표 6-6〉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현황 조사계획

구 분	평가항목		측정지점	측정횟수	분석항목
자연환경의 보전	동·식물상		-	2회	육상식물상(식물상 및 식생현황조사) 육상 및 육수동물상, 법정보호종
수환경의 보전	수질	지표수질	5지점	2회	pH, BOD, SS, DO, COD, TOC, T-N, T-P, CN, Cr <sup>+6</sup> , As, Hg, Pb, Cd, ABS, PCB, 유기인, 총대장균군수, 유량 (19항목)
		지하수질	2지점	2회	pH, 총대장균군수, NO <sub>3</sub> -N, Cl <sup>-</sup> , Cd, As, CN, Hg,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Pb, Cr <sup>6+</sup> , TCE, PCE,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20항목)
생활환경의 안전성	대기질		4지점	2회	PM-10, PM-2.5, SO <sub>2</sub> , NO <sub>2</sub> , CO, O <sub>3</sub> , Pb, 벤젠 (8항목)
	토양		2지점	2회	Cd, Cu, As, Hg, Pb, Cr <sup>6+</sup> , Zn, CN, Ni, F, 유기인, PCBs, 페놀, TCE, PCE, 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19항목)
	소음 ·진동	소음	4지점	2회	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		주간 2회, 야간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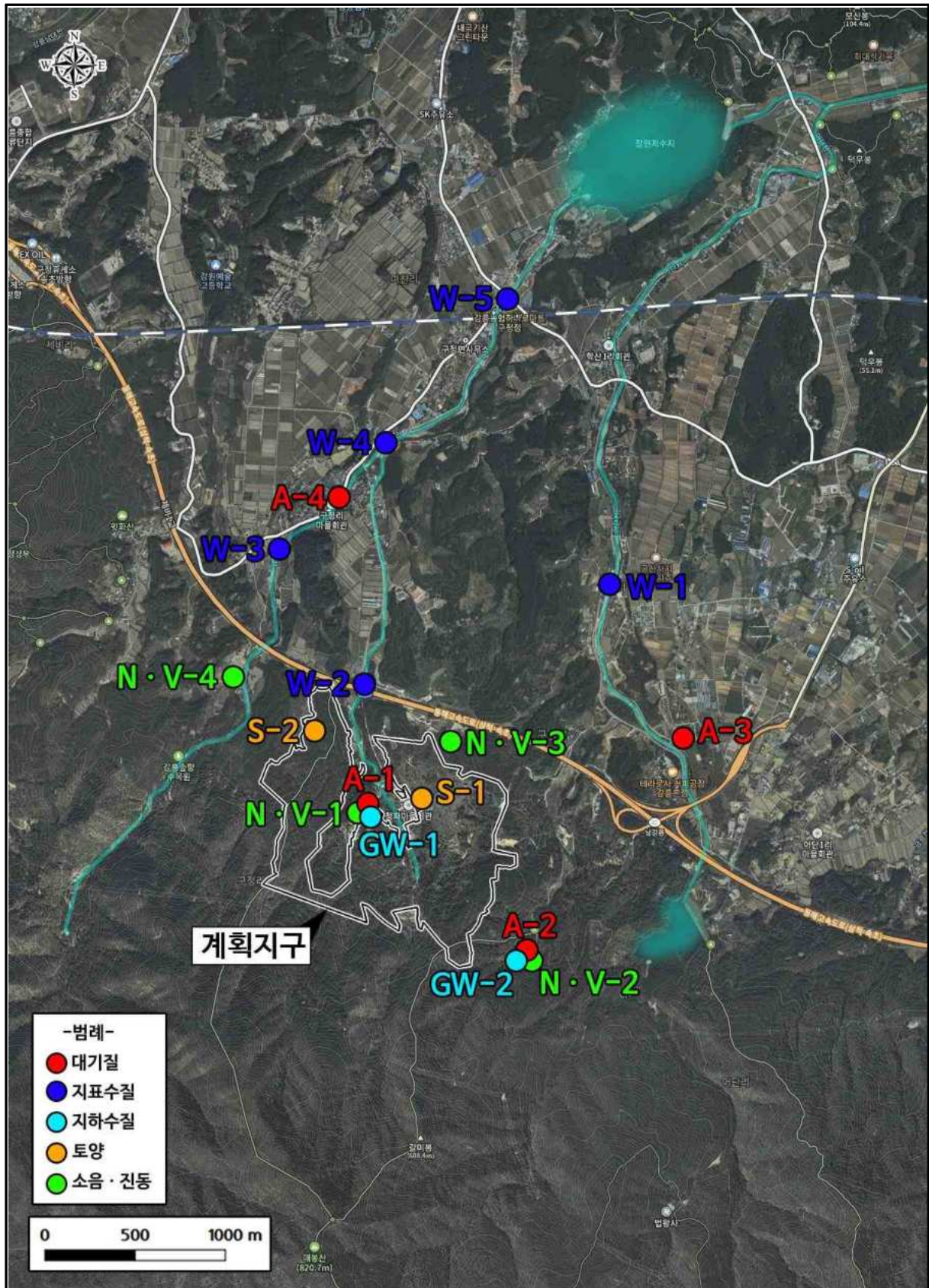
〈표 6-7〉 환경영향평가 환경현황 조사계획

구 분	평가항목		측정지점	측정횟수	분석항목
자연환경	동·식물상		-	1회	육상식물상(식물상 및 식생현황조사) 육상 및 육수동물상, 법정보호종
대기환경	대기질		4지점	1회	PM-10, PM-2.5, SO <sub>2</sub> , NO <sub>2</sub> , CO, O <sub>3</sub> , Pb, 벤젠 (8항목)
수환경	수질	지표수질	5지점	1회	pH, BOD, SS, DO, COD, TOC, T-N, T-P, CN, Cr <sup>6+</sup> , As, Hg, Pb, Cd, ABS, PCB, 유기인, 총대장균군수, 유량 (19항목)
		지하수질	2지점	1회	pH, 총대장균군수, NO <sub>3</sub> -N, Cl <sup>-</sup> , Cd, As, CN, Hg,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Pb, Cr <sup>6+</sup> , TCE, PCE,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20항목)
토지환경	토양		2지점	1회	Cd, Cu, As, Hg, Pb, Cr <sup>6+</sup> , Zn, CN, Ni, F, 유기인, PCBs, 페놀, TCE, PCE, 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19항목)
생활환경	소음·진동	소음	4지점	1회	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			주간 2회, 야간 1회

〈표 6-8〉 환경질 현황조사지점 및 선정사유

구분		지점명	조사위치	사유
대기질		A-1	강릉시 구정면 구정치 32-1	주거지
		A-2	강릉시 구정면 구정면 설래길 164(대성사)	종교시설
		A-3	강릉시 구정면 구정둔지길 47-20(학산리 주거지)	주거지
		A-4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255-2	주거지
수질	지표수질	W-1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951-1(석천교)	어단천
		W-2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66-4(청파교)	구정천
		W-3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569(수목원길)	섬석천
		W-4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316-4(장수교)	섬석천(합류지점)
		W-5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730-12(오동교)	섬석천
	지하수질	GW-1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32-1	-
		GW-2	강릉시 구정면 구정면 설래길 164(대성사)	-
토양		S-1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37-17	전
		S-2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	임야
소음·진동		N·V-1	강릉시 구정면 구정치 32-1	주거지
		N·V-2	강릉시 구정면 구정면 설래길 164(대성사)	종교시설
		N·V-3	강릉시 구정면 청파로 135-56(청파로 주거지)	주거지
		N·V-4	강릉시 구정면 수목원길 76-40(수목원길 주거지)	주거지

주) 현장여건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지점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그림 6-2) 환경질 측정지점 위치도



#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7.1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14일 이상 게시할 것임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은 주민의견 제출 및 수렴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가 주관하여 실시할 계획임

#### 1)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고 시행
-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본 계획 주관 지자체 및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할 계획임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공람내용 및 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공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공고·공람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게시

## 2) 공람

- 공람장소는 주관 지자체 및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해당 장소에서 20일 이상 공람하며, 평가서초안, 초안 열람부 및 의견제출서 비치할 계획임

### 다. 설명회 및 공청회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할 계획임
  - 설명회 장소는 관할 지자체와 추후 협의 후 결정
  -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설명회 개최내용 1회이상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사항에 해당내용을 포함한 경우 제외)
-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한(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 되는 날)까지 접수된 의견에 따라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함

### 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 7.2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5항 및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6항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심의를 거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지 결정내용 공개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법적 실시근거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b>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b>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⑥ <b>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b>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 나. 환경영향평가지서 초안의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지서(초안)의 공고·공람은 주민의견 제출 및 수렴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가 주관하여 실시할 계획임

#### 1)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가서 초안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고 시행
-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본 계획 주관 지자체 및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할 계획임
  - 지자체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공람내용, 평가서 초안 요약서 공개

#### 2) 공람

- 공람장소는 주관 지자체 및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해당 장소에서 20일 이상 공람 할 계획임
- 공람장소에 평가서 초안, 초안 열람부 및 의견제출서를 비치 할 계획임

**다. 설명회 및 공청회**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중 1회 실시 할 계획임
  - 설명회 장소는 관할 지자체와 추후 협의 후 결정
  -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설명회 개최 내용 1회이상 공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사항에 해당내용을 포함한 경우 제외)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한(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 되는 날)까지 접수된 의견에 따라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함

**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할 계획임

**마.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생략**

- 추후 본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음
  -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 가능

<b>「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5항</b>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b>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li> <li>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li> </ol>

전략 환경영향평가 절차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대상계획 제안자—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승인기관장)	(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평가 준비서 제출 - 계획 면적 6만㎡ 미만은 생략가능 (본 계획 해당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Scoping)	(법 제11조, 시행령 제9조)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 방법 등(심의기간:30일, 보완기간, 공휴일 미산입)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의 결정내용 공개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제출 (의견제출기간 : 30일 이내)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대상계획 제안자 — 승인기관, 협의기관, 그 외 관계 행정기관
	주민의견수렴(공람 및 설명회 개최) (초안 제출 10일 이내에 공람)	(법 제12~14조, 시행령 제13조~제16조) ○ 주민공람 : 2개 일간신문 공고, 20~40일 이상 공람 ○ 공청회 :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	(법 제13조, 시행령 제19조)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법 제16조, 시행령 제2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계획제안자 — 승인기관 제출 — 협의기관 협의 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기간 : 30~40일(보완기간, 공휴일 미산입))	(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삽입되지 않음 -보완·조정 2회 제한(시행 2017.5.30)
	협의의견 통보	○ 협의기관 — 승인기관 — 계획제안자
조치계획 통보 (계획을 확정할 날부터 30일 이내)	○ 승인 후 30일 이내 -계획제안자 — 승인기관 —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제출 (의견제출기간 : 30일 이내)	(법 제25, 시행령 제34, 제35조) ○ 사업자 — 승인기관, 협의기관 ○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협의기관과 협의 후 생략 가능
	주민의견수렴(공람 및 설명회 개최) (초안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법 제25, 시행령 제36~제39) ○ 주민공람 : 2개 일간신문 공고, 20~60일 이상 공람 ○ 설명회 : 7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공청회 개최시 변동 ○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협의기관과 협의 후 생략 가능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전)	(법 제25조, 시행령 제43조)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협의기관과 협의 후 생략 가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법 제27조, 시행령 제46, 제47조) ○ 사업자 — 승인기관 —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기간:45~60일(보완 및 공휴일 미산입))	(법 제28조, 시행령 제48조) ○ 기간:45~60일,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삽입되지 않음 -보완·조정 2회 제한
	협의의견 통보	(법 제29조, 시행령 제50조) ○ 협의기관 — 승인기관 — 사업자
	협의의견 반영결과 통보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법 제30조, 시행령 제51조) ○ 승인 후 30일 이내 사업자 — 승인기관 — 협의기관

(그림 7-1) 협의 절차



##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함

〈표 8-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p><b>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b></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p><b>제4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구성)</b></p> <p>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p> <p>② 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li> <li>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li> <li>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li> <li>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li> <li>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li> <li>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li> <li>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li> <li>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li> <li>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li> </ol> <p>③ 환경영향평가협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p>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 계획수립기관, 협의기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10인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음

**<표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위원장	장○○	강릉시 (도시교통국)	계획수립기관
위원	주○	강릉시 (도시과)	계획수립기관
위원	권○○	강릉시 (환경과)	계획수립기관
위원	이○○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협의기관장 소속 공무원
위원	김○○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위원	김○○	강릉시의회	지자체 주민대표
위원	안○○	주민대표 (구정면)	지자체 주민대표
위원	허○○	강원대학교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위원	박○○	(주)마린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위원	김○○	강릉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 8.2.1 협의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음

#### 가. 의견수렴기간

- 서면심의기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3일

#### 다. 심의의견 수렴결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의견 수렴결과 총 10명의 위원 중 10명의 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수렴되었음

<p align="center"><b>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b> (계획명 : 강릉 구정 골프&amp;리조트)</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input type="checkbox"/> 용도지역 변경 및 환경·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물의(√) 표시</li> <li>●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추가제언을 작성</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의견없음</li> <li>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사업 부지에 따라 적절한 대상지역의 범위로 설정되었음</li> <li>토지이용 구상안 : 동의(√), 수정의견( ) ○ 사업지구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함</li> <li>대안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각 대안별 환경적 영향의 비교검토를 통해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함</li> <li>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수정의견( ) ○ 지역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li> <li>주변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수정의견( ) ○ 입회 계획으로 예상되는 환경적 영향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야 함</li> <li>기 타 ○ 의견없음</li> </ol>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p> <p align="right">2024. 4. 1. 심의위원 : <input type="text"/></p>	<p align="center"><b>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b> (계획명 : 강릉 구정 골프&amp;리조트)</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등을 작성</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동의(√) 표시</li> <li>●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추가제언을 작성</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항목별 환경보전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li> <li>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면위로 설정하여야 함</li> <li>토지이용 구상안 : 동의(√), 수정의견( ) ○ 의견없음</li> <li>대안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지역의 특성과 방향을 반영하여 대안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설정하여야 함</li> <li>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수정의견( ) ○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가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함</li> <li>주변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수정의견( ) ○ 지역 주민들이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li> <li>기 타 ○ 의견없음</li> </ol>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p> <p align="right">2024. 4. 1. 심의위원 : <input type="text"/></p>
<p align="center"><b>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b> (계획명 : 강릉 구정 골프&amp;리조트)</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input type="checkbox"/>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절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 발생 시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계갈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민원의 사전 예방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계획지구 입지에 적절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li> <li>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계획지구 및 인근 마을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토지이용 구상안 : 동의(√), 수정의견( )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충분한 녹지 확보)을 수립하여야 함</li> <li>대안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각 대안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li> <li>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수정의견( )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선정하여야 함</li> <li>주변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수정의견( ) ○ 주민 설명회는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정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사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li> <li>기 타 ○ 의견없음</li> </ol>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p> <p align="right">2024. 4. 1. 심의위원 : <input type="text"/></p>	<p align="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b> 【강릉북합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강릉 구정 골프&amp;리조트)】</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p><input type="checkbox"/> 본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 일원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 입지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및 검토 자료를 충실히 작성·제시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동 계획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조성계획 수립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p> <p>※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13)」 등에 따라 작성</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 시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예측·평가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등 검토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함.</p> <p>· 계획지구 인근의 타 개발계획 수립 여부를 파악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누적 환경영향 여부를 검토·예측</p>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부지 및 주변의 지형, 수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작·감점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범위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범위의 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li> <li>- 계획부지 주변의 운영 및 개발(예) 사업 등을 포함한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항목별 누적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제시</li> </ul> </li> </ol>

(그림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p><b>2.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계획의 성격,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li> <li>○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전지역과 보전축 등의 환경보전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고, 상충되는 지역의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저감 및 대안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선결</li> <li>- 생태자연도 등 자연생태, 산지경사도, 보전산지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구 내 양호한 식생(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이상)과 자연지형 등은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 유지를 위한 생태축(농진축, 소농진축, 산간계류 등) 확보 방안 마련</li> <li>- 골프장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동식물상, 지형·지질, 수질 등)을 당초 대비 가능한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 강구</li> <li>- 사업지구 경계지역은 인접한 지역의 자연생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보전 녹지의 충분한 확보 방안 마련 및 보전녹지와 기타 조정녹지를 명확히 구분</li> <li>- 계획지구와 인접한 도로, 정문시설 및 하천 등에서의 경관영향, 생활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최소화 방안 강구</li> </ul> </li> <li>○ 사업에 대한 3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li> <li>○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도면, 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li> </ul> <p><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식물상은 식생, 식물상, 표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등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 및 방법을 설정, 문헌 및 현지 조사 범위를 구분</li> <li>-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멸종보존종의 중별 활동·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동·식물분야의 면밀한 조사와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보전방안을 검토·제시</li> <li>- 사업부지 내·외 환경민감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구 지경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li> <li>- 「생태면적률 적용지침(162, 환경부)」에 따라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 생태면적률을 산정·제시</li> <li>- 상수원(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등), 하천수질보전(국가·지방하천 등),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제시</li> <li>- 현재 용수 확보 현황을 반영하여 지하수 등 추가 수원을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향조사를 별도 항목으로 지정하여 적정 용수공급 방안(지하수 대체용수 확보 등)을 수립·제시</li> <li>- 대기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조사 필요</li> <li>- 사업지구 인근 영문시설에 대한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제시</li> <li>-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 검토와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및 저감대책(친환경적 에너지 사용 등) 수립·제시</li> <li>- 과도한 지형 훼손, 주요 조망점으로부터의 경관 훼손여부 검토 및 이에 따른 보전방안을 강구·제시</li> <li>- 인공건축물 및 조성녹지 등이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li> </ul> <p>※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령 제726호, 23.4.10)」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저감방안 강구 전·후를 비교하여 제시하되, 저감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할 경우, 그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li>○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식생 등 생육이 양호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력사항,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사업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최대 10년간) 활용</li> </ul> </li> </ul> <p><b>4. 주민의견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 수립 등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시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설명회 시 도표, 인포그래픽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이 적은 일반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li> <li>-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감,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문자발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li> </ul> </li> </ul> <p><b>5. 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과정에서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평가 항목, 범위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재차 심의·검토하여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2024. 4.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이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40px; height: 20px; vertical-align: middle;"></span></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b> (계획명 : 강릉 구경 골프&amp;리조트)</p> <p><b>□ 총괄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건은 강릉시 구경면 구경리 산100번지 일원에 기존 복합형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관광·휴양형으로 변경하고 일부 면적 증가 및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제1회)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임</li> <li>○ 기존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구간에 대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면밀한 동식물상 조사와 더불어 원형보전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규모 대안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li> </ul> <p><b>□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동의에 '√' 표시</li> <li>※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추가사항을 작성</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li> <li>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li> <li>3. 토지이용 구상안 : 동의( ), 수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체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안 고려</li> </ul> </li> <li>4. 대안의 설정 : 동의( ), 수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규모 대안 검토: 기존 원형보전 지역을 유지하는 개발 계획(토지이용 계획)을 포함 규모 대안 검토 실시</li> </ul> </li> <li>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 수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자연도 1등급에 둘러싸인 산림을 포함한 대상지 현황을 고려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분류군별도 생육이 양호한 시기 및 중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포함하여 현지조사를 수행. 우수 산림 및 멸종보존종 식생 공간 등을 파악하여 보전대책 수립</li> <li>○ 시형분석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누락되는 도면 없이 고해상도로 명확히 작성. 본 계획 시점에 따른 지형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시</li> <li>○ 경관부조화가 생가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도로 및 원래가 많은 지점 등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근경, 중경, 원경에 대해 경관시뮬레이션을 수행</li> <li>○ 수목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원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수립</li> <li>○ 주변의 용수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용수공급계획을 수립. 지하수 개발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수행하여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li> </ul> </li> </ol>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 수정의견( ✓ )  <input type="checkbox"/> 제임의도 기준과 달리지는 사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필요</p> <p>7. 기 타  <input type="checkbox"/> 절차상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input type="checkbox"/> 본 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우수 산담 훼손, 멸종보호종 서식지 파괴, 사도한 계획폐손이 예상될 경우 계획 대한 마련</p>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 )</p> <p>2024. 3. 29.</p> <p>심의위원 : 김 [ ]</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b>  (계획명 : 강릉 구정 골프&amp;리조트)</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친박적인 검토의견 등을 작성</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동의에 "✓" 표시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추가 의견을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환경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li> <li>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평가대상지역 설정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li> <li>3. 토지이용 구상안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토지이용 구상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li> <li>4. 대안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대안 설정의 수정 및 추가 대안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li> <li>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시 기초자료나 공공데이터 활용, 필수 평가항목 제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의견 제시</li> <li>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의견수렴계획에 대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li> <li>7. 기 타  <input type="checkbox"/> 상의 계획과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의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li> </ol>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p> <p>2024. 4. .</p> <p>심의위원 : 김 [ ]</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b>  (계획명 : 강릉 구정 골프&amp;리조트)</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친박적인 검토의견 등을 작성</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동의에 "✓" 표시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추가 의견을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환경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li> <li>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평가대상지역 설정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li> <li>3. 토지이용 구상안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토지이용 구상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li> <li>4. 대안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대안 설정의 수정 및 추가 대안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li> <li>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시 기초자료나 공공데이터 활용, 필수 평가항목 제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의견 제시</li> <li>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의견수렴계획에 대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li> <li>7. 기 타  <input type="checkbox"/> 상의 계획과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의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li> </ol>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p> <p>2024. 3. 27.</p> <p>심의위원 : 김 [ ]</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b>  (계획명 : 강릉 구정 골프&amp;리조트)</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input type="checkbox"/>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주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되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동의에 "✓" 표시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추가 의견을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의견없음</li> <li>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계획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li> <li>3. 토지이용 구상안 : 동의( ), 수정의견(✓)  <input type="checkbox"/> 계획지구는 주변 지역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되고,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하여야 함</li> <li>4. 대안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No Action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야 함</li> <li>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평가 항목, 범위 및 방법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li> <li>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수정의견( )  <input type="checkbox"/>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영향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주민생태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li> <li>7. 기 타  <input type="checkbox"/>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중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ol>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p> <p>2024. 3. .</p> <p>심의위원 : 허 [ ]</p>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p style="text-align: center;"><b>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b> (계획명 : 강릉 구경 골프&amp;리조트)</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은 계획지구 주변 지역의 현황 및 사업계획에 의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의거 조사시기 및 항목을 설정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p>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수정의견( ) ○ 의견없음</p> <p>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 수정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여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0.5Km로 확대함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 설정하여야 함</p> <p>3. 토지이용 구상안 :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수정의견( ) ○ 계획지구 주변 지역 현황 및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4. 대안의 설정 :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수정의견( ) ○ 의견없음</p> <p>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 수정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동·식물상 조사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0.5Km로 확대하고 생물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조사하는 것이 타당함</p>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수정의견( )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주민 의견수렴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지구 대상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신문광고,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p> <p>7. 기 타 ○ 의견없음</p>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p> <p style="text-align: right;">2024. 4. 2. 심의위원 : 박 [ ]</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b> (계획명 : 강릉 구경 골프&amp;리조트)</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 이전에 있었던 공사중지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p>※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동의에 "✓" 표시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추가제언을 작성</p> <p>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수정의견( ) ○</p> <p>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수정의견( ) ○</p> <p>3. 대안의 설정 : 동의( ), 수정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동시간 연결능선부에 야생동물 이동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는 안을 검토해함.</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 수정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길안은 2.0km로 고정시키지 말고 주요경관차원의 가시권역으로 변경되어야 함, 그러므로 경관 변화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가시권분석이 우선 시행되어야 함.</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 수정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본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중단의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상세한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6. 기 타 ○</p>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p> <p style="text-align: right;">2024. 04. 03. 심의위원 : 김 [ ]</p>
공란	공란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